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 업무매뉴얼



2023. 6.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 업무매뉴얼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업무매뉴얼에 탑재되어 있으며, 매뉴얼에 링크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식 등의 참고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경우에만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에 링크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식 등은 참고용이므로 관련 부서의 공문, 지침, 계획 등을 확인 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 매뉴얼은 2023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관계 법령, 지침, 계획 등의 변경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편 안전교육	1
1. 학교안전계획	2
2. 학생 안전교육	4
3. 교직원 등 안전교육	5
4.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7
5.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9
제2편 교육활동 안전	11
1. 학교안전사고 사안보고	12
2. 학교안전공제회	13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안전	16
4. 1일형 현장체험학습 안전	19
5. 생존수영교육	21
6.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24
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	26
8. 정보통신윤리교육	28
제3편 생활안전	29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30
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31
3. 학생자살사고 예방	32
4.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33
5. 안전한 등하곳길(통학로) 만들기	34
6. 물놀이 안전	35
7.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운영	36
8. 학교출입관리	38
9.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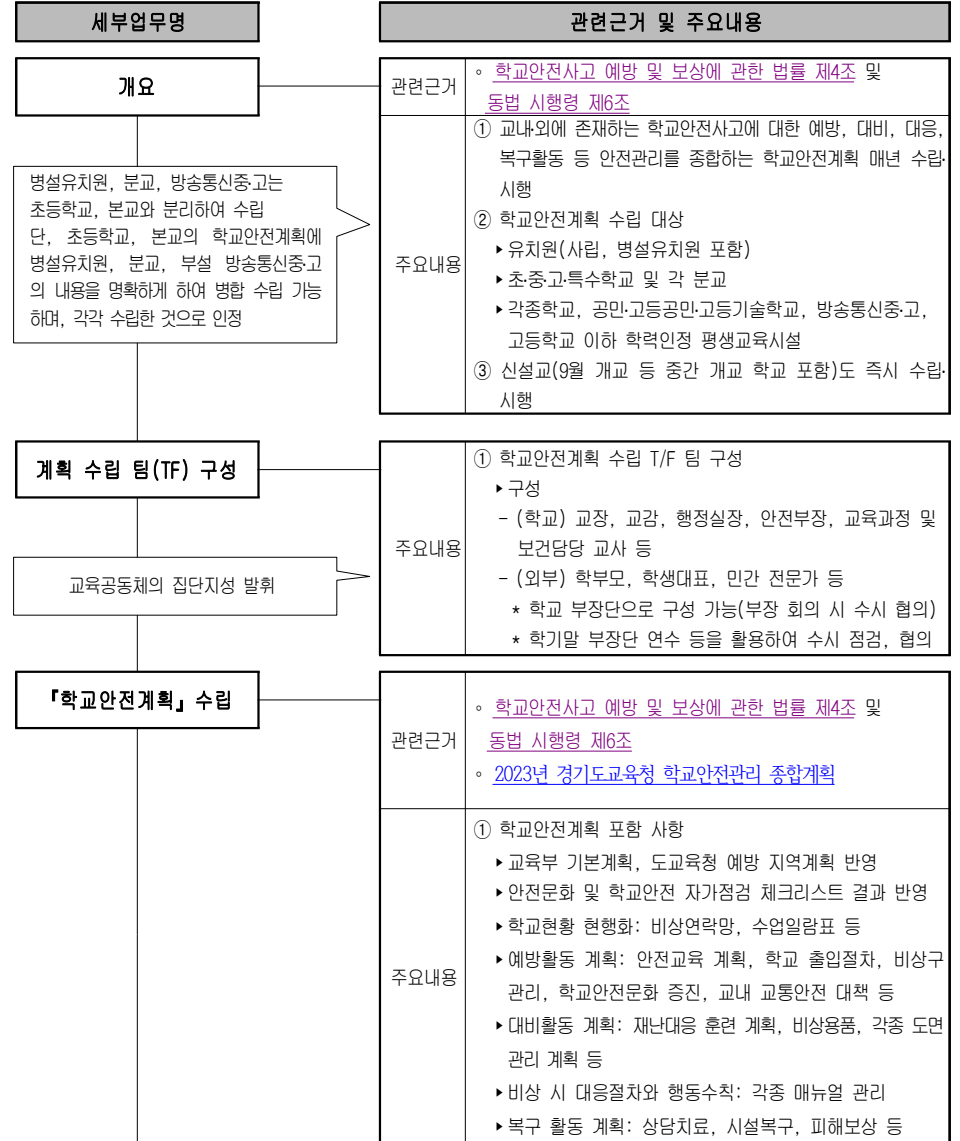
제4편 재난안전	41
1. 대설·한파	42
2. 폭염	45
3. 풍수해(태풍·집중호우·강풍)	47
4. 지진(지진해일)	50
5. 황사	52
6. 미세먼지	53
7. 오존	55
8. 화재	56
9. 유해화학물질	59
10. 식중독 발생 시 단계별 대처요령	60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67
12. 민방위 훈련	68
13. 교육시설공제	69
제5편 시설안전	71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건축 분야)	72
2. 전기 분야 안전	74
3. 소방 분야 안전	78
4. 가스 분야(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	81
5. 승강기 분야 안전	83
6. 용벽 안전점검	85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86
8. 안전점검의 날	88

제 1 편 안전교육

업 무 명	안전교육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학교보건법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업무개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계획 수립, 학생과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관련 업무
주요내용	단 위 업 무
	1. 학교안전계획
	2. 학생안전교육
	3. 교직원 등 안전교육
	4.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5.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포털(생애주기 안전교육자료 탑재)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안전 - 안전교육자료) ○ 경기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업무지원 - 알림판 - 나침반교육)

1. 학교안전계획

교내·외에 존재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 안전관리를 종합하는 학교안전계획 매년 수립·시행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계획」 시행 및 평가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매년 2월 말까지 ② 교직원 대상 연수: 3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직원 대상 「학교안전계획」에 대한 연수 실시 (학교에서 자체 계획 수립, 참석자 등록부 보관) ③ 학교 홈페이지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로그인 없이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게시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은 비공개) ④ 학교안전계획서 제출: 매년 3월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 ⑤ 자체평가: 3월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학교안전계획 자체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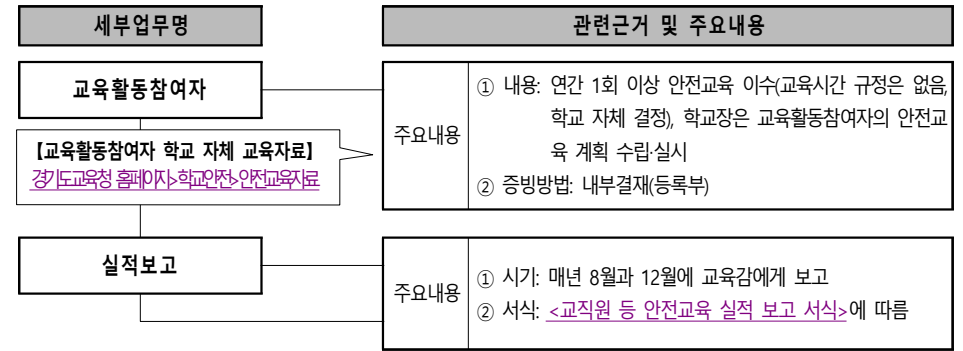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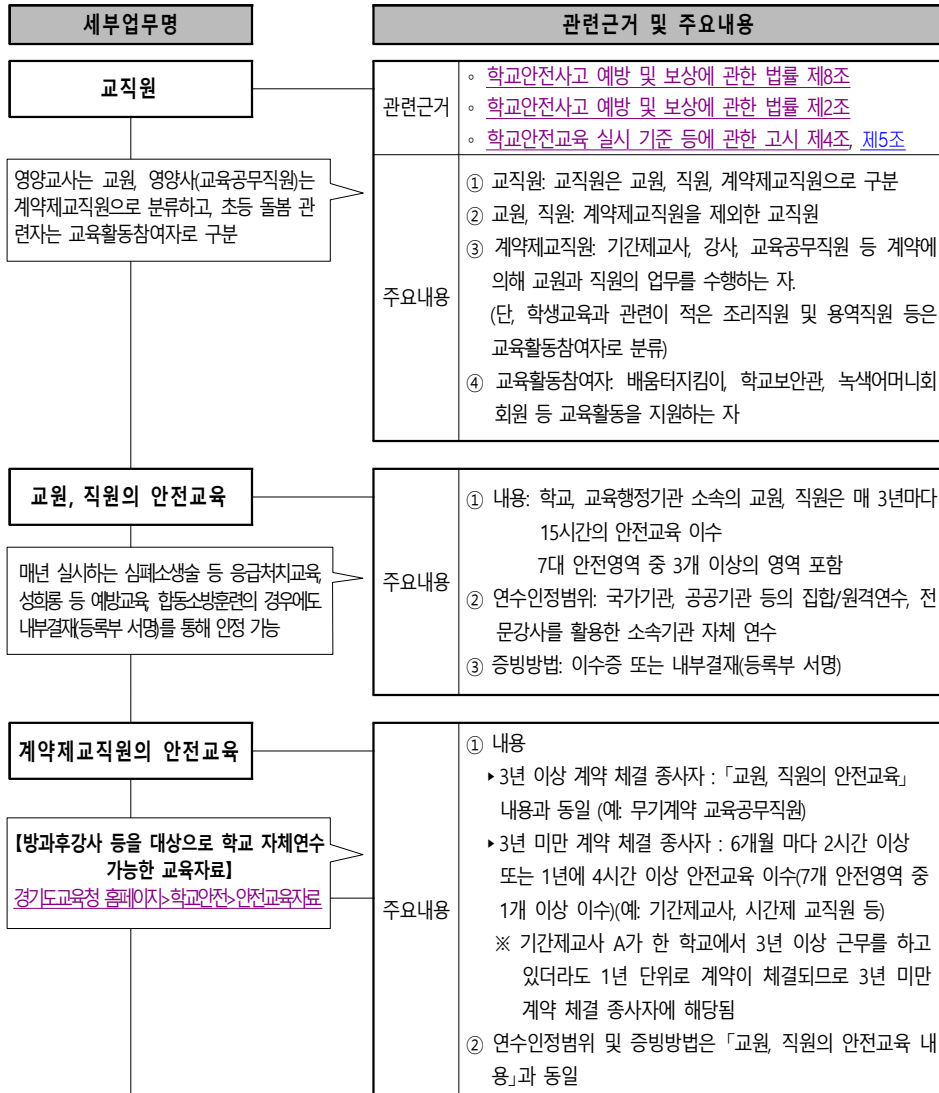
2. 학생 안전교육

학교(유치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시행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생안전교육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과정 연계 학생 7대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및 교육활동 전·후 안전교육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학생안전교육 시수 (51차시)와 횟수를 반영 ※ 영역: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 안전, 응급처치
실적보고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기: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 ② 서식: <학생안전교육 실적 보고 서식>에 따름

3. 교직원 등 안전교육

학교(유치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4.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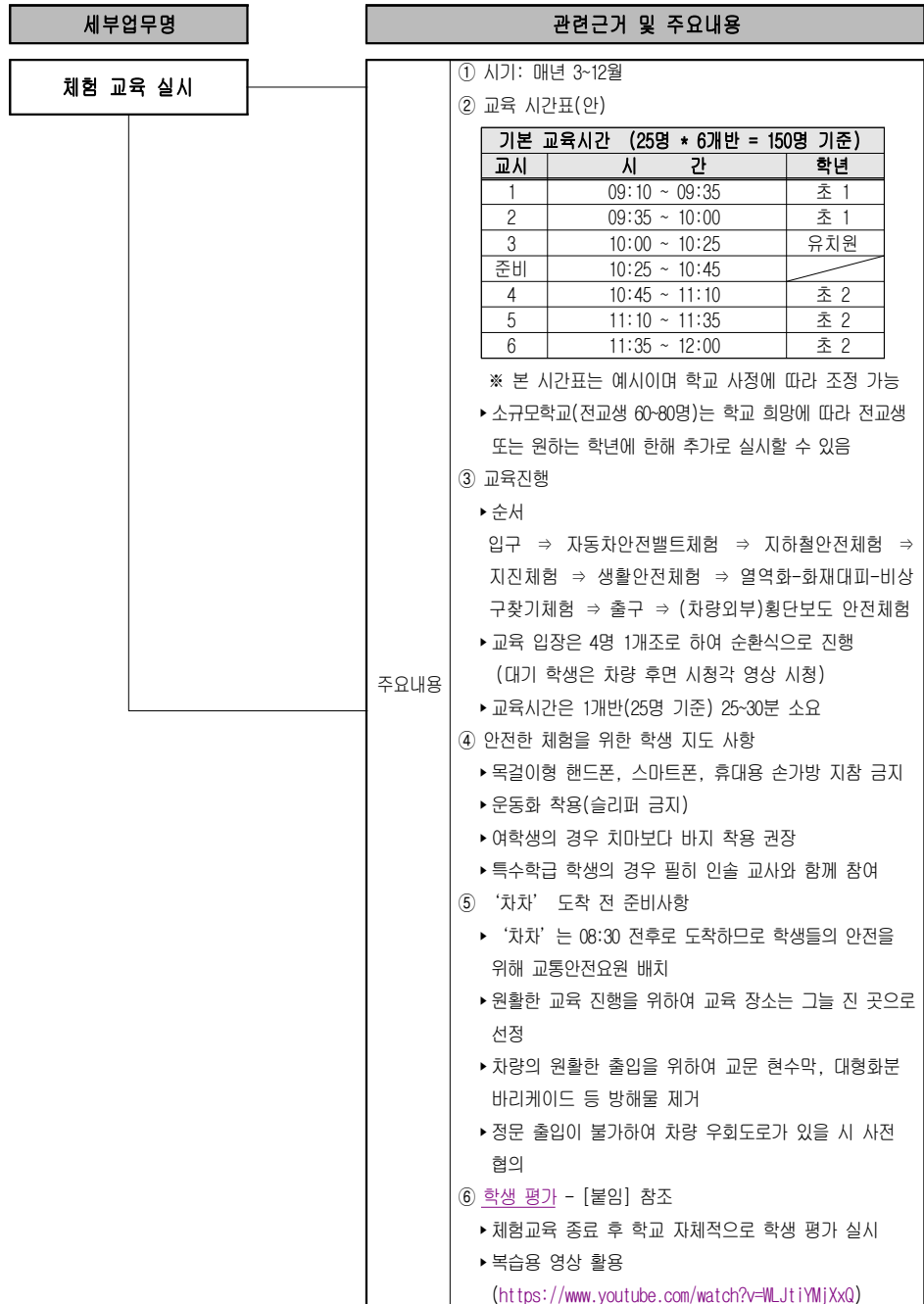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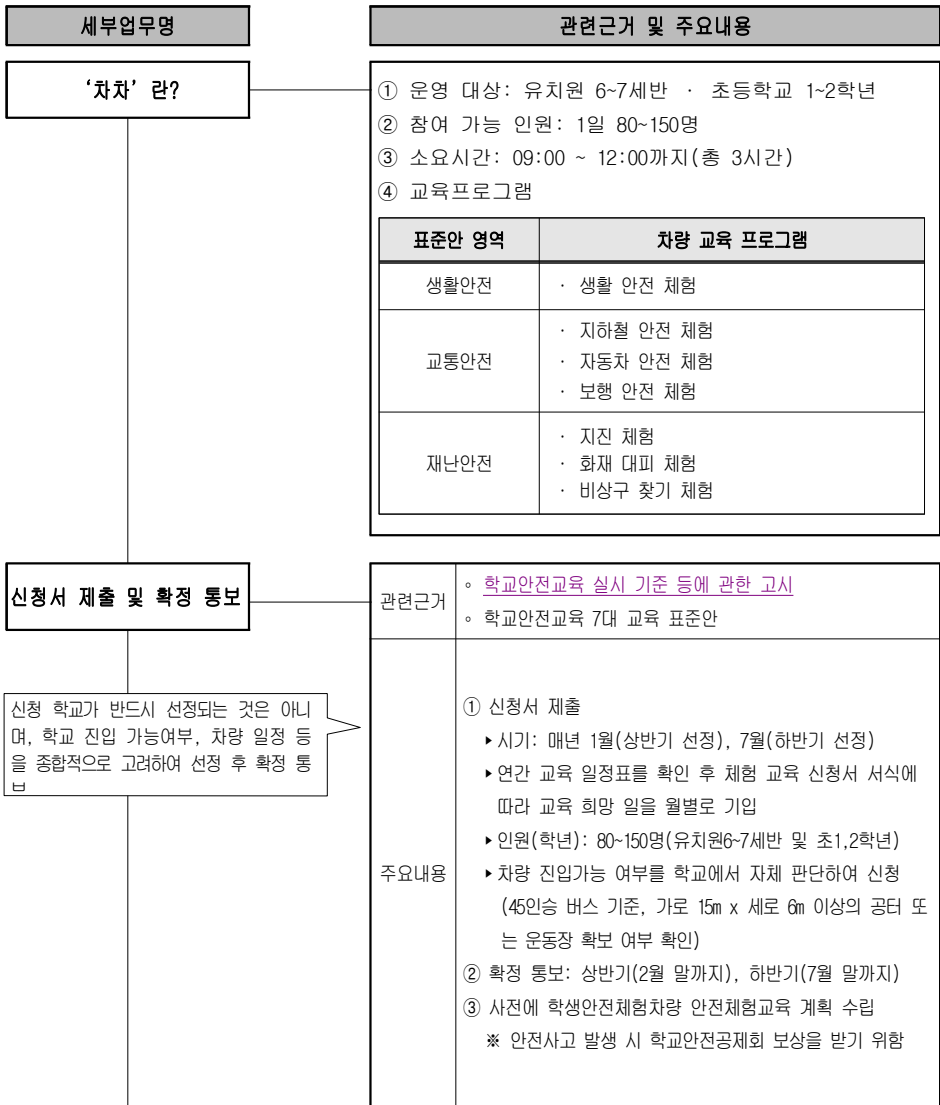
학교(유치원)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계획(대상·내용·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수립하고 매년 실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용: 학교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②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 지방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립학교 직원 ▶ 교육공무직원 ▶ 스포츠강사 또는 운동부지도사 등 학생 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교직원 ③ 계획 수립: 매학년 3월 31일까지 수립 (기준 당해 연도 3월 ~ 다음연도 2월) ④ 교육시간: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⑤ 강사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자격 소지자) ▶ 응급구조사(응급의료, 구조, 구급, 교육 강사 등에서 5년 이상 종사자) ⑥ 면제대상: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 ⑦ 이수처리: 이수증 또는 내부결재(등록부 서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응급처치교육 등(외부)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3항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3항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용: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대학교,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 지원 가능 예) ∞병원 응급처치교육, 재난안전본부 응급처치교육, ∞소방서 응급처치교육, ∞연수원 응급처치교육 등에서 교육을 이수(이 경우에도 학교보건법 강사요건과 교육 시간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필요) ② 이수처리: 이수증 또는 내부결재(등록부 서명)
실적보고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기: 해당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출 ② 제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 인원수(교원, 직원) ▶ 교육실시 인원수(교원, 직원) ▶ 교육실시율 = 교육실시 인원수/교육대상 인원수

5.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학교에서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를 이용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안전 체험 교육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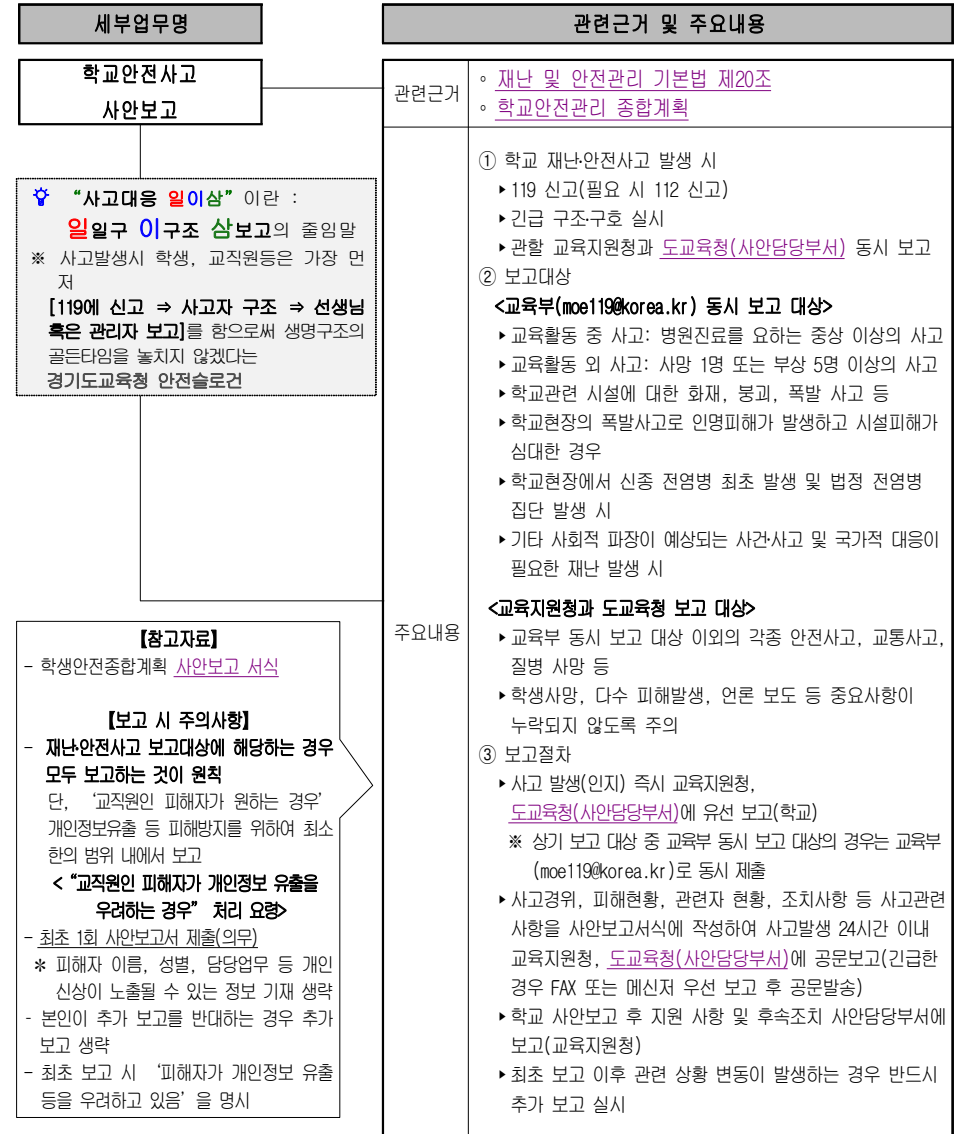


제 2 편 교육활동 안전

업 무 명	교육활동 안전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업무개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고 및 보상 처리절차와 체험학습,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 중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주요내용	<p>단 위 업 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안전사고 사안보고 2. 학교안전공제회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안전 4. 1일형 현장체험학습 안전 5. 생존수영교육 6.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7. 특성학교 마이스터고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 8. 정보통신윤리교육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체험학습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학습자료(초등용, 중학교용, 고등학교 핸드북) - 청소년활동안전센터 ○ 과학실험실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실험 안전 매뉴얼(초등, 중등)(경기도교육청, 2014.12.) - 화학약품 안전관리 매뉴얼(초등, 중등)(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16.) ○ 특성학교 마이스터고 실험실습실 안전: 특성학교 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퍼링크 ○ 정보통신윤리교육: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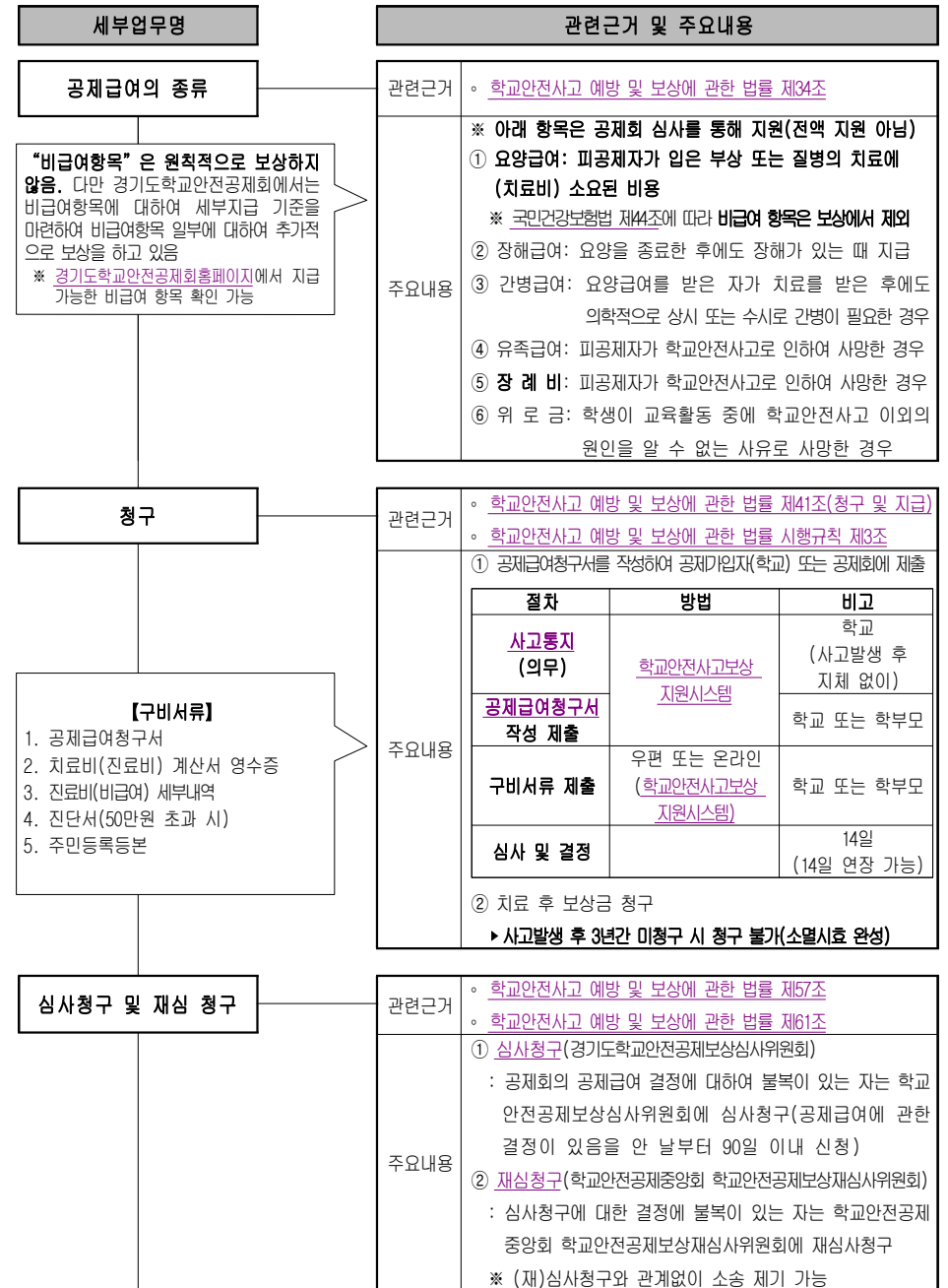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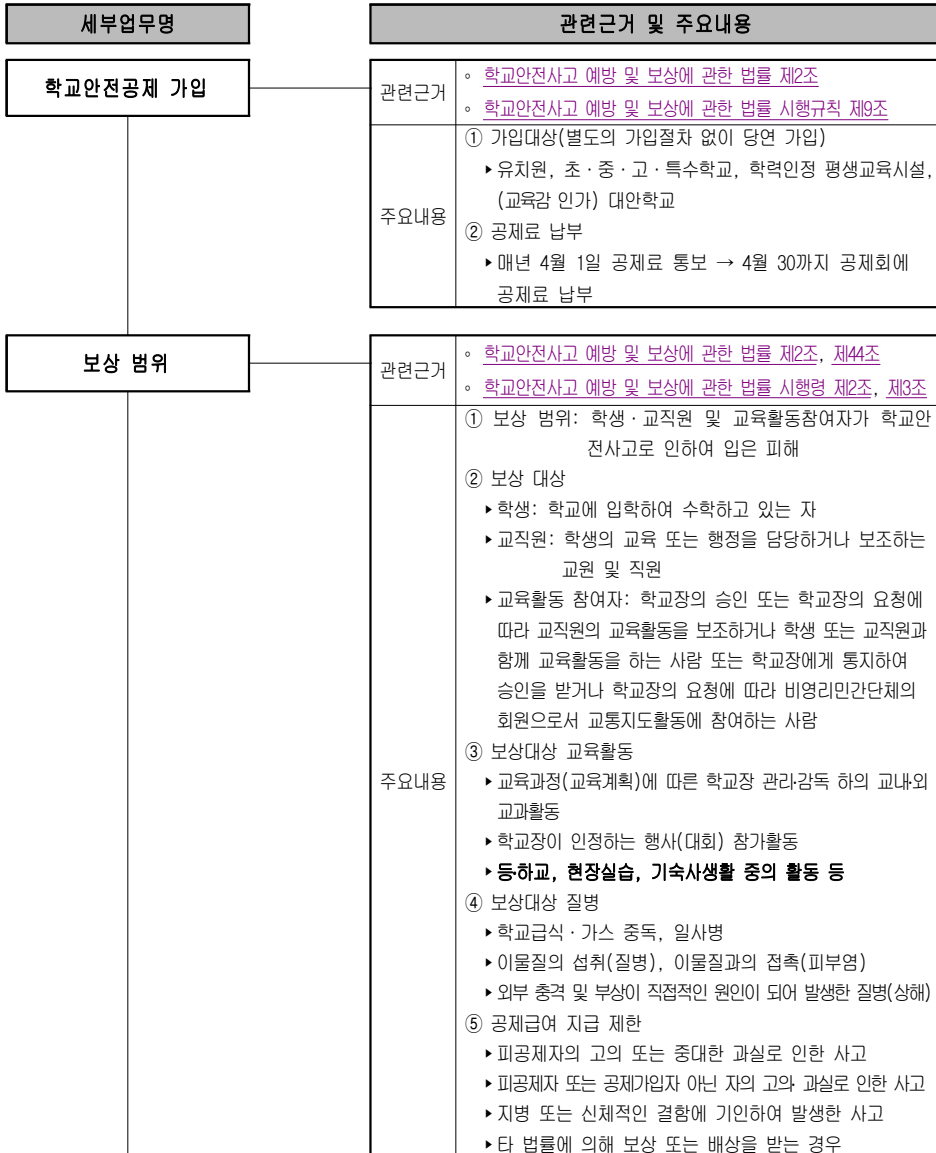
1. 학교안전사고 사안보고

안전사고 등 학생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체계 운영으로 피해현황 파악 및 지원, 추가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통한 학생안전 확보



2.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보상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구비서류】 1. <u>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서</u> 2. <u>학교장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u> 3.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심리검사결과 보고서, 상담기록지 4. 주민등록등본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u> 주요내용 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학교폭력 대상 X) ②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 범위(1년 연장 가능) ③ 청구절차 ▶ <u>지원 신청서</u> 및 구비서류 학교안전과 제출(업무관리시스템) ▶ 대상자 지정 결정 ▶ 통보(학교 및 신청인) ▶ <u>공제회에 치료비 신청</u> (우편) ④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지정 명단
학교배상책임공제	주요내용 ① 경기도교육청 일괄 가입(학교 별도 가입 불요) ② 보상범위 ▶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업무(시설물 관리 제외)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 교육활동 중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 "휴대품"의 범위: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③ 사고발생통지 및 보상 신청 (<u>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u> (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sws/)) ▶ <u>사고발생통지서</u> 및 <u>공제급여청구서</u> 제출 ▶ (휴대품 분실) <u>분실사고발생신고서</u> 및 <u>보상신청서</u> 제출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안전대책 등의 안전이 뒷받침된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참고자료】 - <u>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참고자료</u> - <u>국외 현장체험학습 공통 준수 사항</u>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초·중등교육법 23조</u> ○ <u>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u> ○ 2015년 개정 교육과정 ○ 202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 소규모 형태의 체험학습 운영 원칙 ▶ <u>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공통 준수 사항</u> 확인 ▶ 필수 포함 요소: 학생안전대책, 사전안전교육,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계약방법을 위한 교육행정실과 협의
활성화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① 기본계획 심의 ▶ 일정, 장소, 경비, 안전계획, 계약방법 등 ② 동의율 설정 ③ 1차 가정통신문 발송 ▶ 자체동의 비율 반드시 안내 ▶ 특히, 동의율 확보 미달 시 체험학습이 취소·변경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④ 현장체험학습 실시 및 변경 여부 결정 ⑤ 현장답사(필요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동의율은 학교 전체, 학년 전체 등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에만 해당 - 불참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 수립 필요 - 국외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동의율 90% 이상 확보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초·중등교육법 제32조</u> 주요내용 ①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심의 ▶ 일정, 장소, 경비, 안전계획, 계약방법 등
계약 시행	주요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 준수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참조: 「학교행정 업무매뉴얼」 학교회계지출(현장체험학습)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현장답사 및 안전교육	<p>① 시행 직전 현장답사(의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담당자, 학부모위원 필수 참여(학생 참여 권장) ▶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형 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 ▶ 숙박시설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 ▶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활성화위원회 보고 <p>② 사전업무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추진 계획 수립, 자체점검표 작성 <p>③ 2차 가정통신문 발송</p> <p>④ 미참가 학생 교육계획 수립</p> <p>⑤ 비상연락망 작성,관리</p> <p>⑥ 요보호 학생 파악</p> <p>⑦ 비상약품 준비</p> <p>⑧ 인솔자 및 안전요원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 2명 이상의 인솔자 확보 권장.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급당(참여 학생 25명 당) 인솔 교사 1명이 인솔 가능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 <p>⑨ 대규모 운영 시 세부계획서 및 자체점검표 제출,컨설팅</p> <p>⑩ 사전 인솔자 안전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안전장구의 사용법 등 <p>⑪ 사전 학생 안전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 ▶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포함 ▶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학습자료, 현장체험학습 안전길리집이,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서 제작한 청소년용 안전가이드 등 참고활용 <p>⑫ 사전/사후 체험학습 운영 사항 입력 (※ 숙박형만 해당)</p> <p>경기교육모아-창의융합체험-사전/사후정보방 (more.goe.go.kr/exp8)</p>

【대규모 주제별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시 안전요원 상시 배치】

- 4학급 이상, 100명 이상 대규모로 시행할 경우 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씩 배치
- 외부안전요원 또는 안전요원 연수 이수 교원 활용
- 경기교육모아-**창의융합체험-안전요원인력풀** (more.goe.go.kr/exp8)
- **코리온**(www.warenet.net), **위크넷**(www.wakgpk.net) 등 활용

현장체험학습 과정의 이동 수단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가급적 안전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

※ 안전 전문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담당, 대한인명구조협회, 소방서, 소방안전협회, 안전요원 연수 이수 교원 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운영 및 자체 평가	<p>① 단체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 점검 ▶ 관할 경찰서 협조 받아 출발 시 운전자 음주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지에서는 자체 음주감지기 활용 ※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 교체 및 112 신고 ※ 계약 특수 조건으로 출발당일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명시 <p>②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학생 안전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선박,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 철저 <p>③ 상시 인원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건강상태 확인 <p>④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 신고 후 구조작업 실시 ▶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SMS(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 ▶ 사안(고) 인지 즉시 보고 -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유선 보고 후 사안보고서 제출 <p>⑤ 불참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계획,운영</p> <p>⑥ 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집행내역 공개, 잔액이 있는 경우 환불 조치 <p>⑦ 자체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활용 <p>⑧ 운영결과 공개(종료 후 20일 이내, 숙박형만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교육모아-창의융합체험-사전/사후정보방 (more.goe.go.kr/exp8)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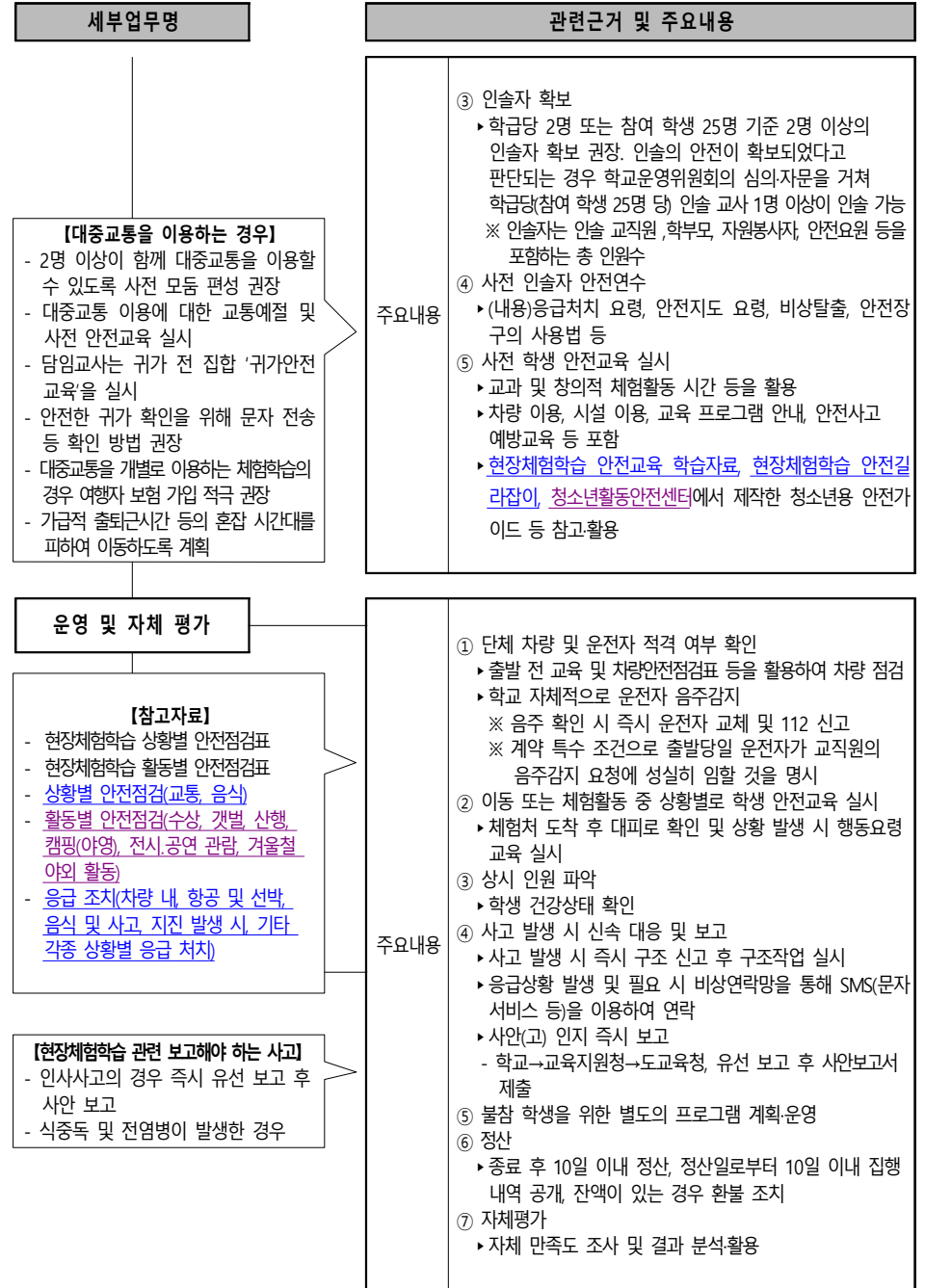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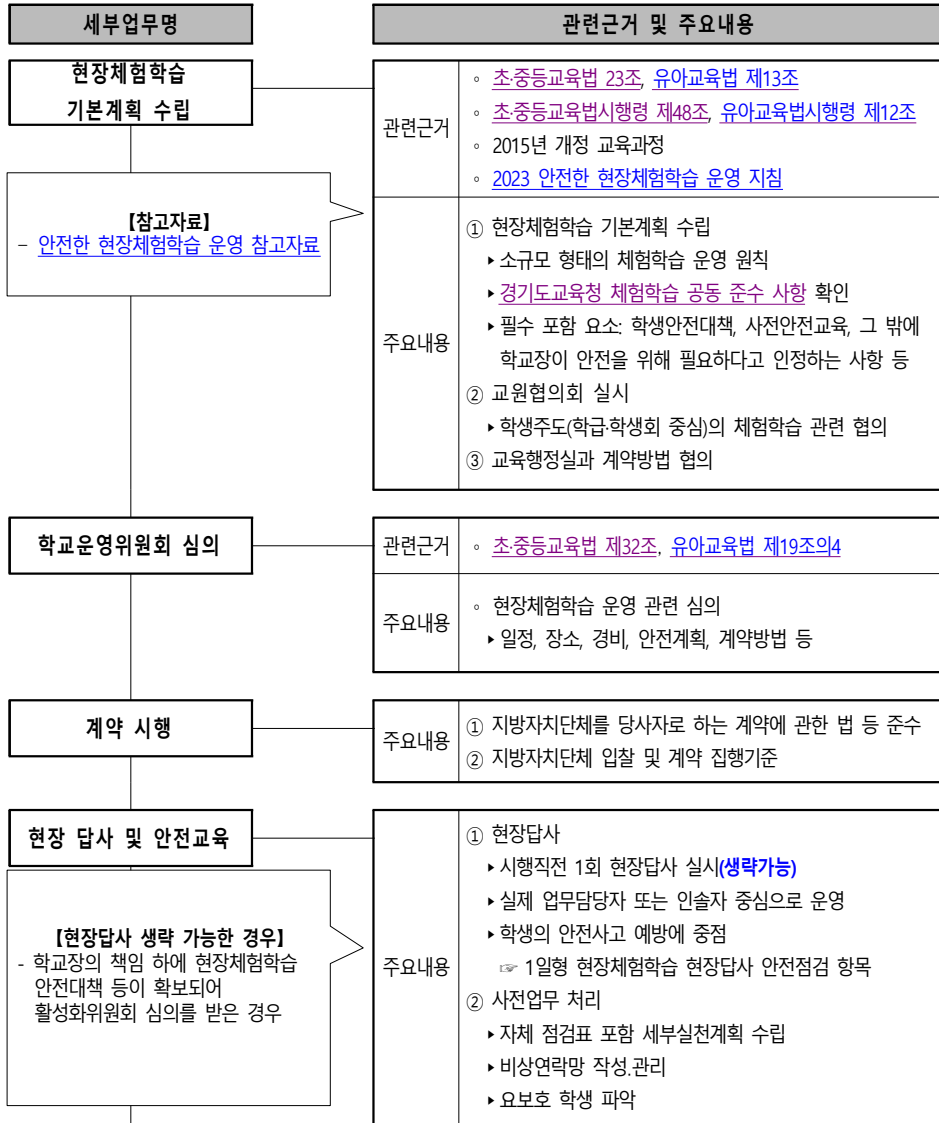
-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안전점검표
- 현장체험학습 활동별 안전점검표
- **상황별 안전점검(교통, 음식, 숙소, 화재 예방)**
- **활동별 안전점검(수상, 갯벌,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 활동)**
- **응급 조치(차량 내, 항공 및 선박, 식사 및 숙소 지진 발생 시, 기타 각종 상황별 응급 처치)**
- **국외 체험학습 안전점검**

【현장체험학습 관련 보고해야 하는 사고】

- 인사사고의 경우 즉시 유선 보고 후 사안 보고
- 식중독 및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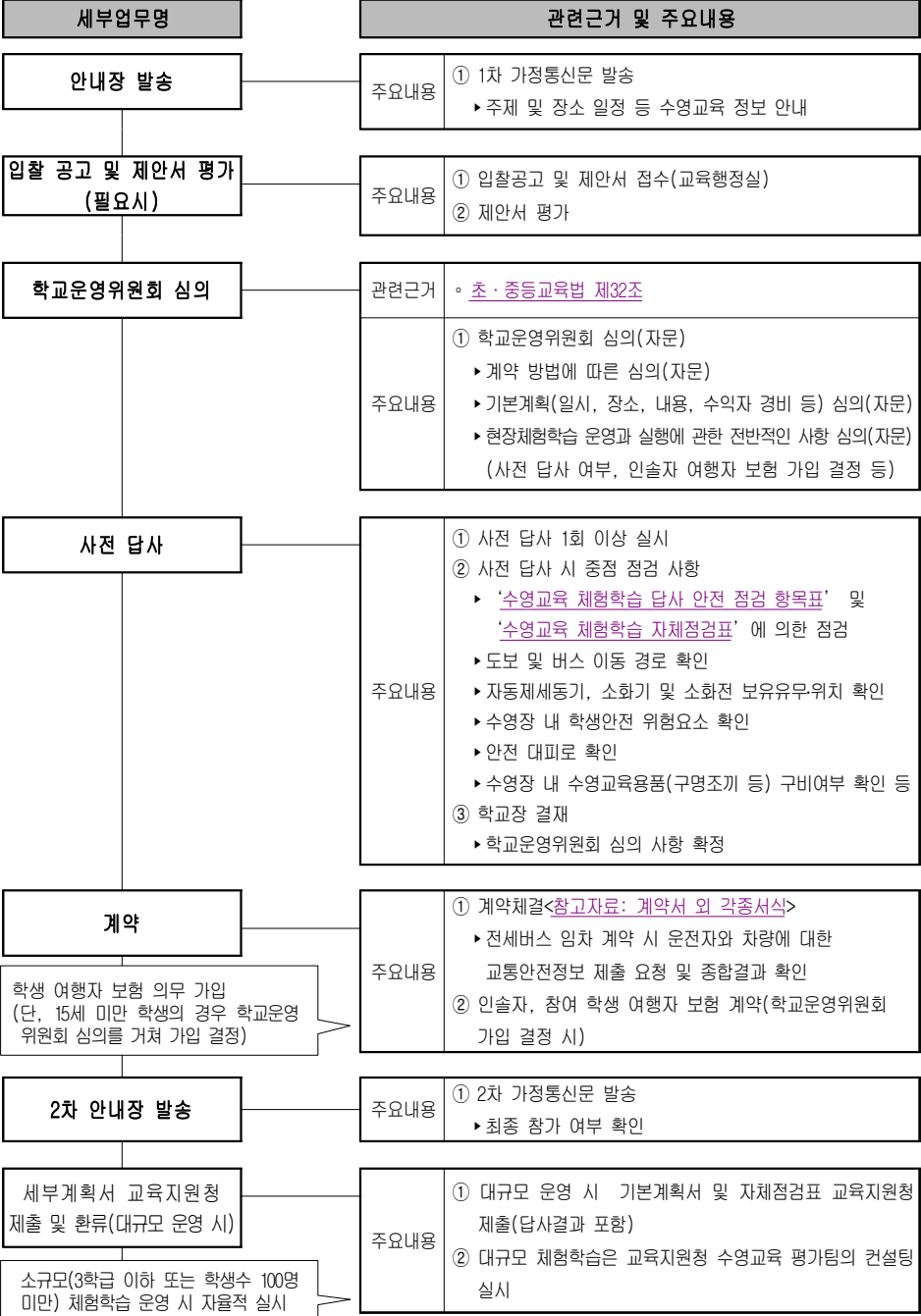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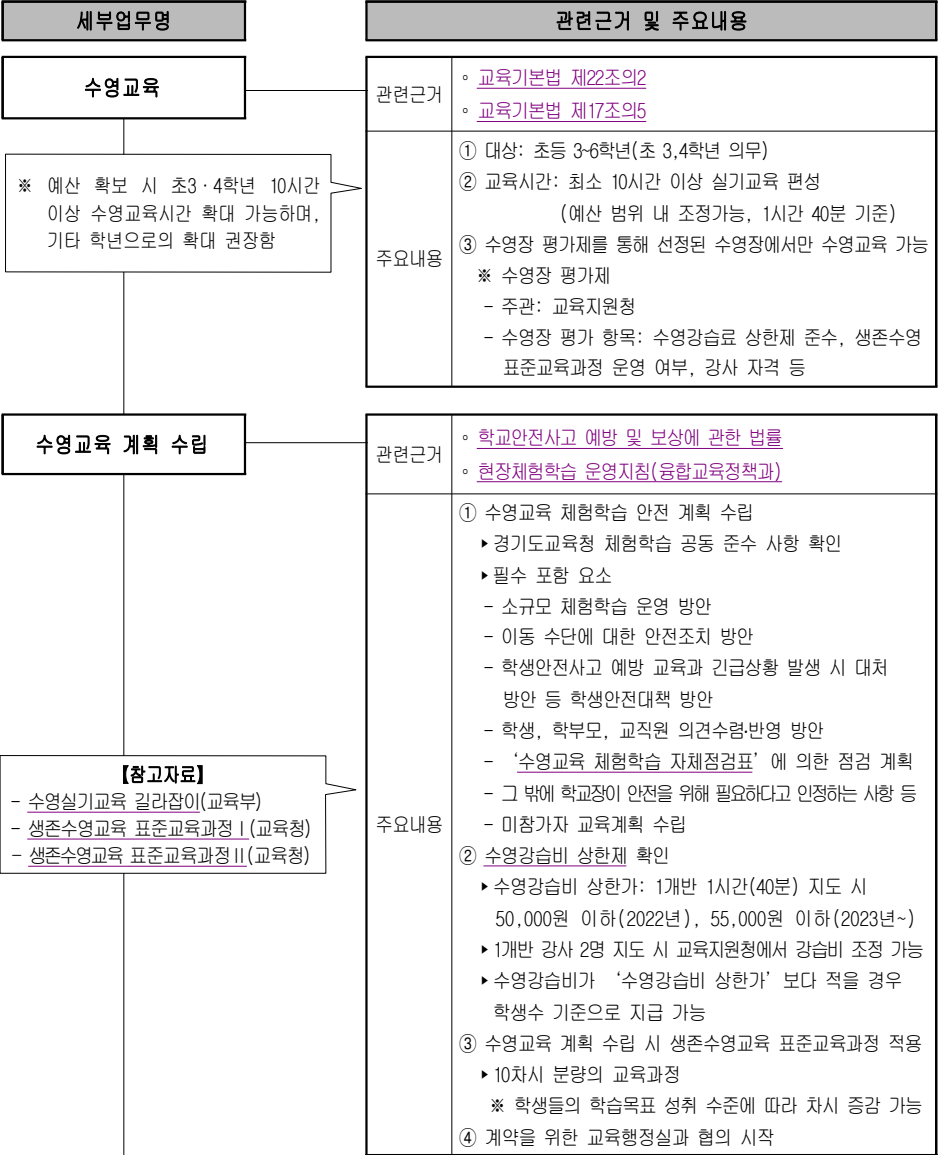
4. 1일형 현장체험학습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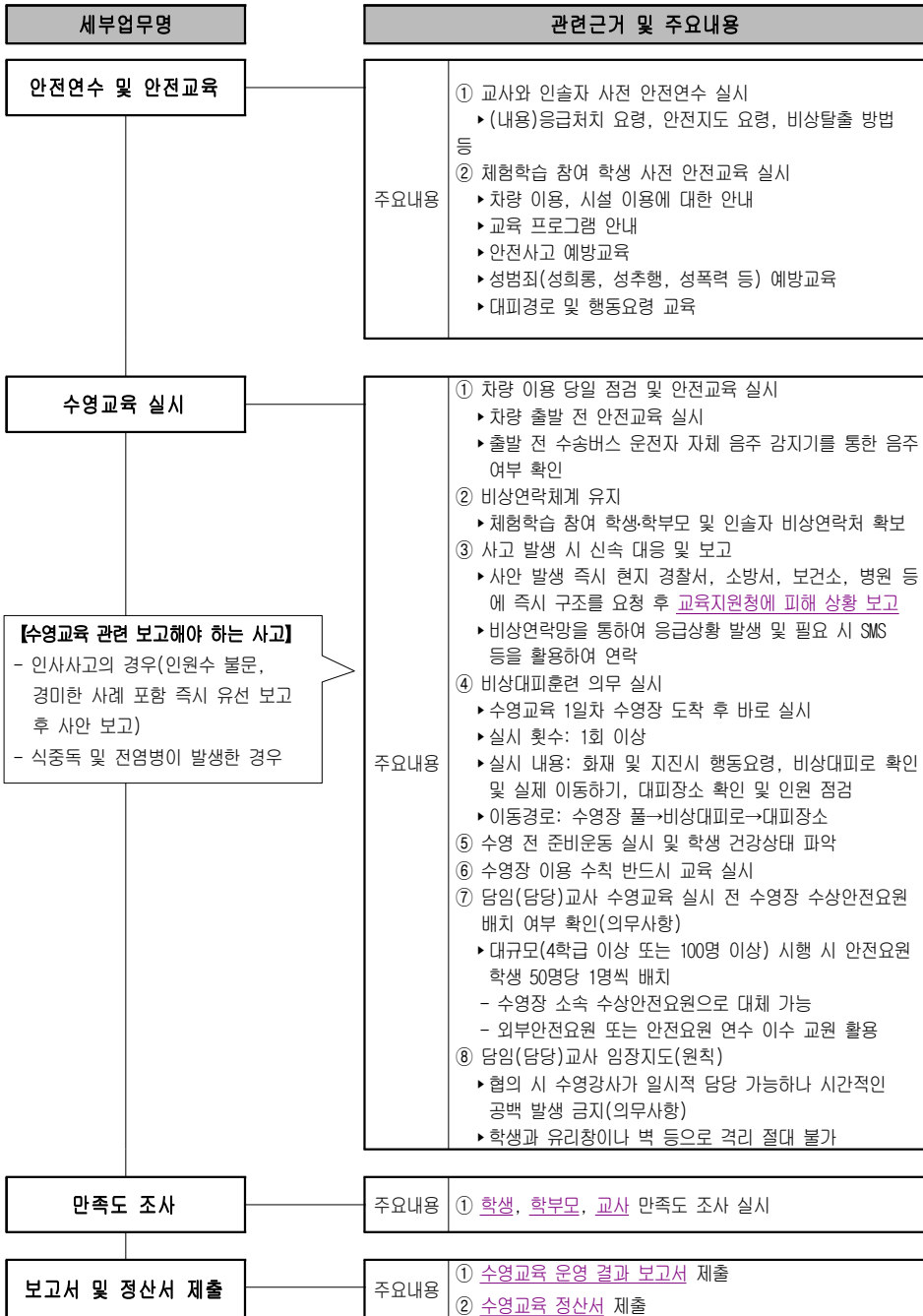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안전대책 등의 안전이 뒷받침된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함



5. 생존수영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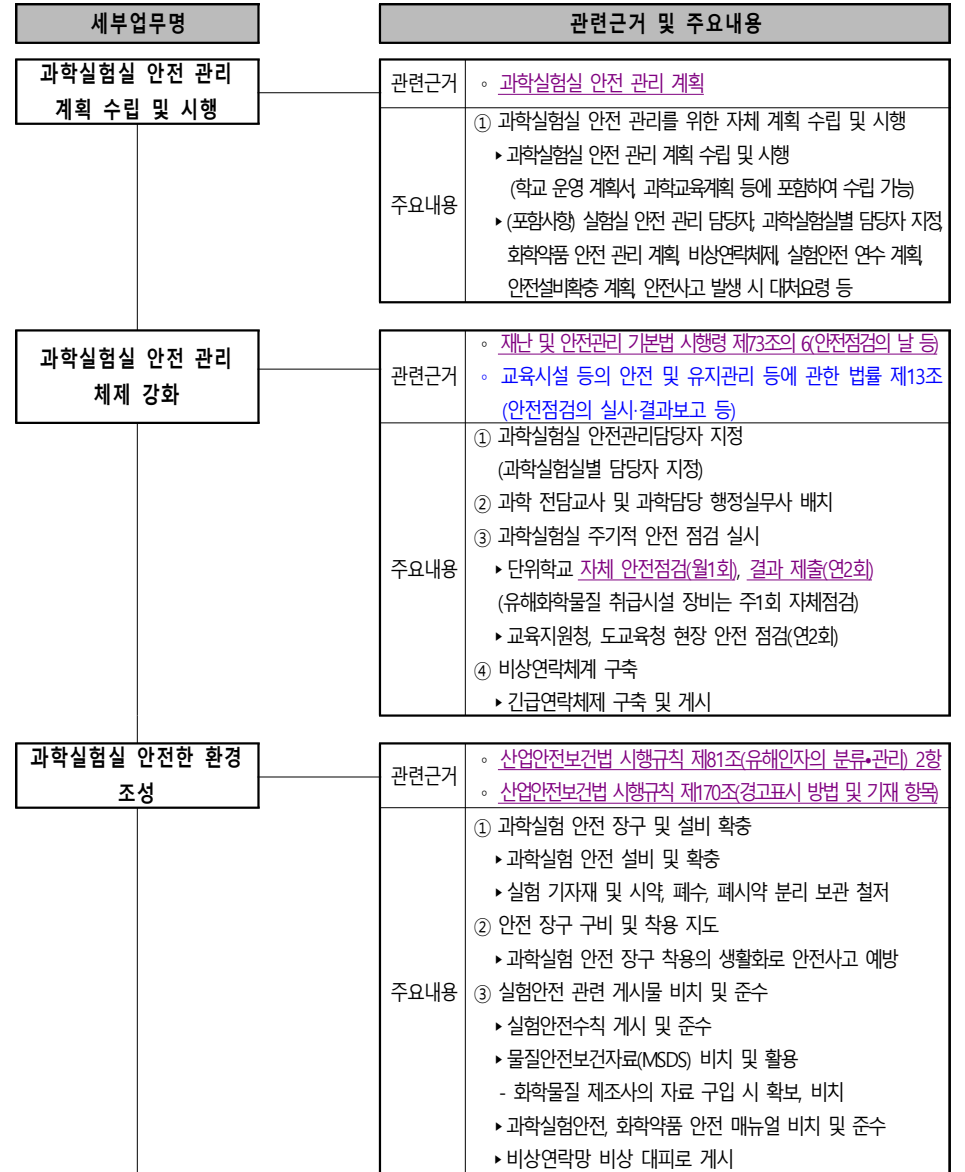
생존수영교육 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여 수영교육의 목표 달성
 ※ 아래의 절차는 교육부·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사업(5:5)의 예산을 지원 받아 진행되는 생존수영교육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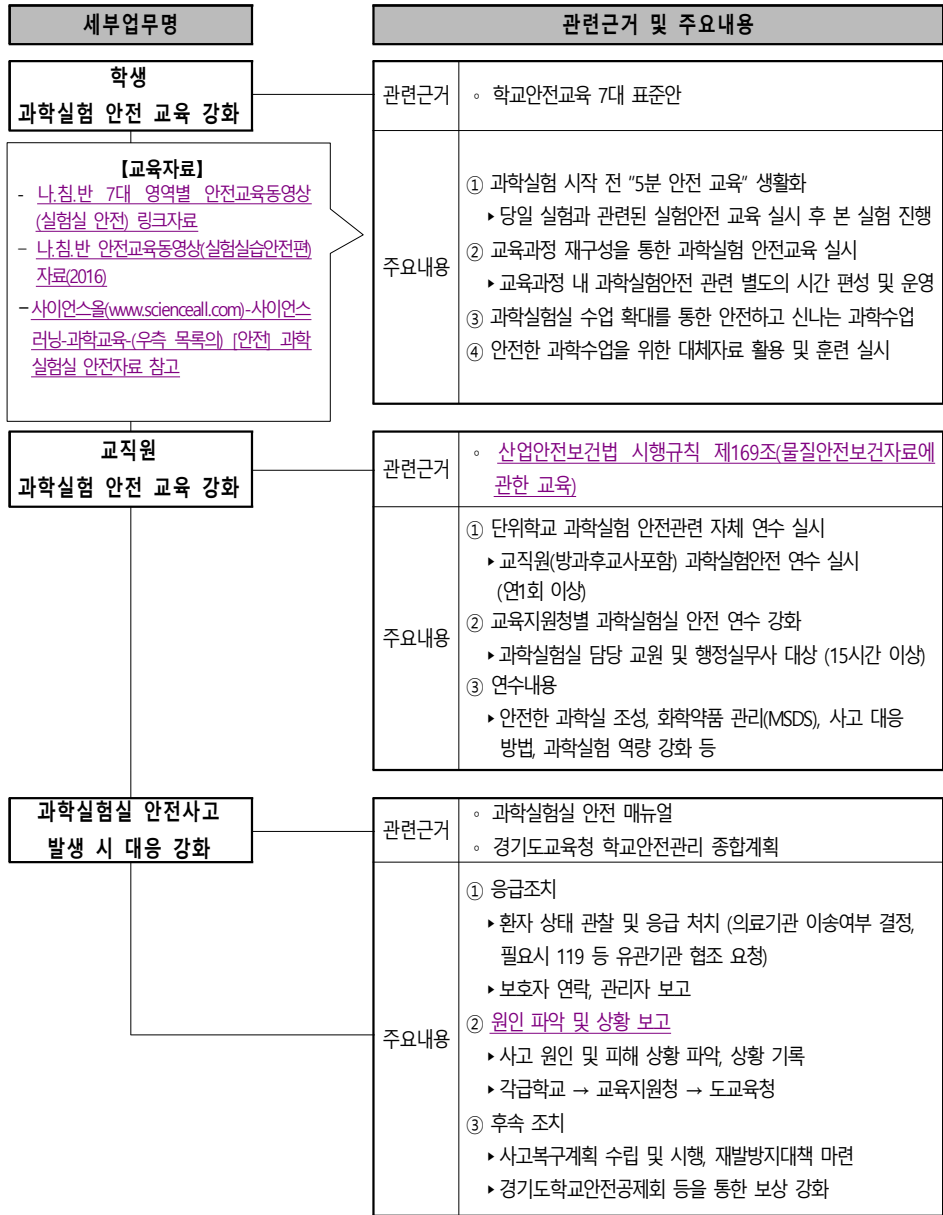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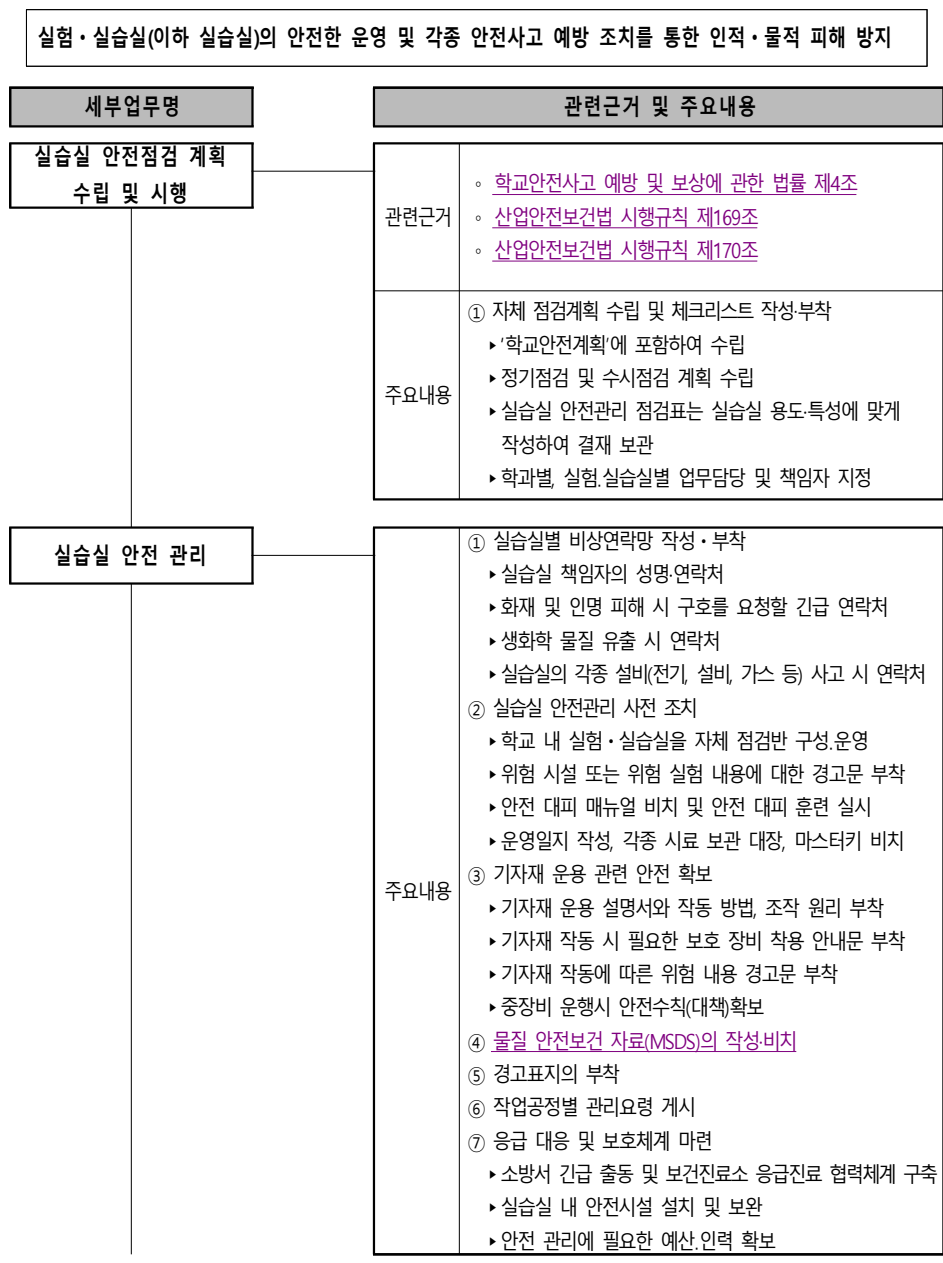
6.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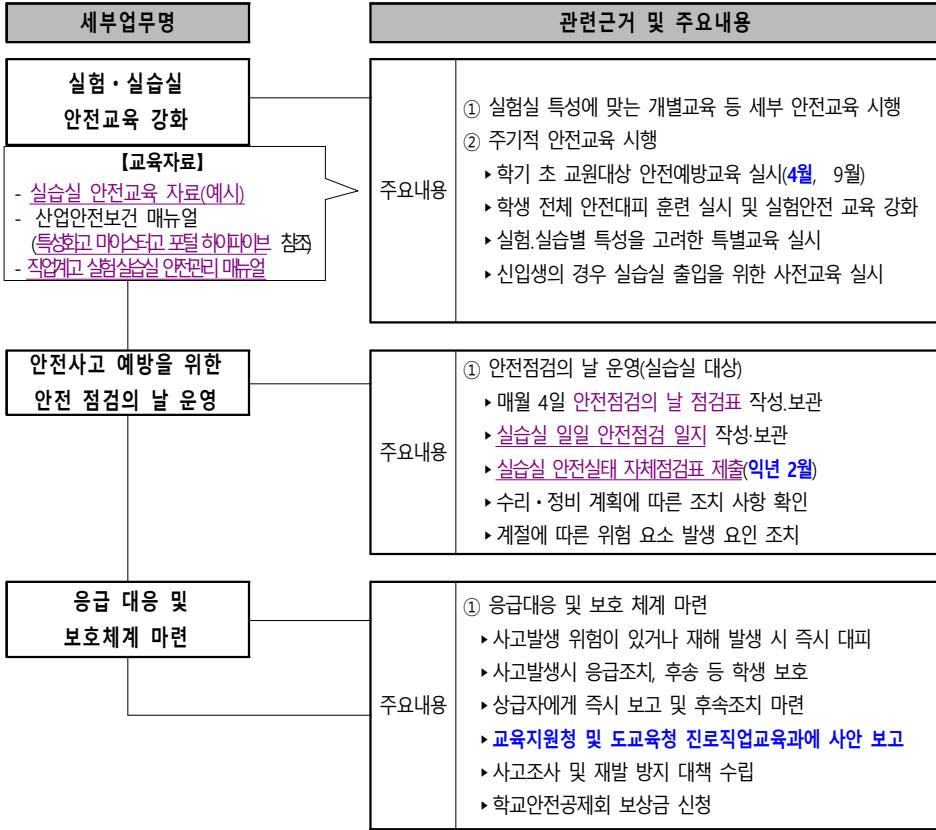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과학실험 안전망 확보를 통한 과학탐구실험교육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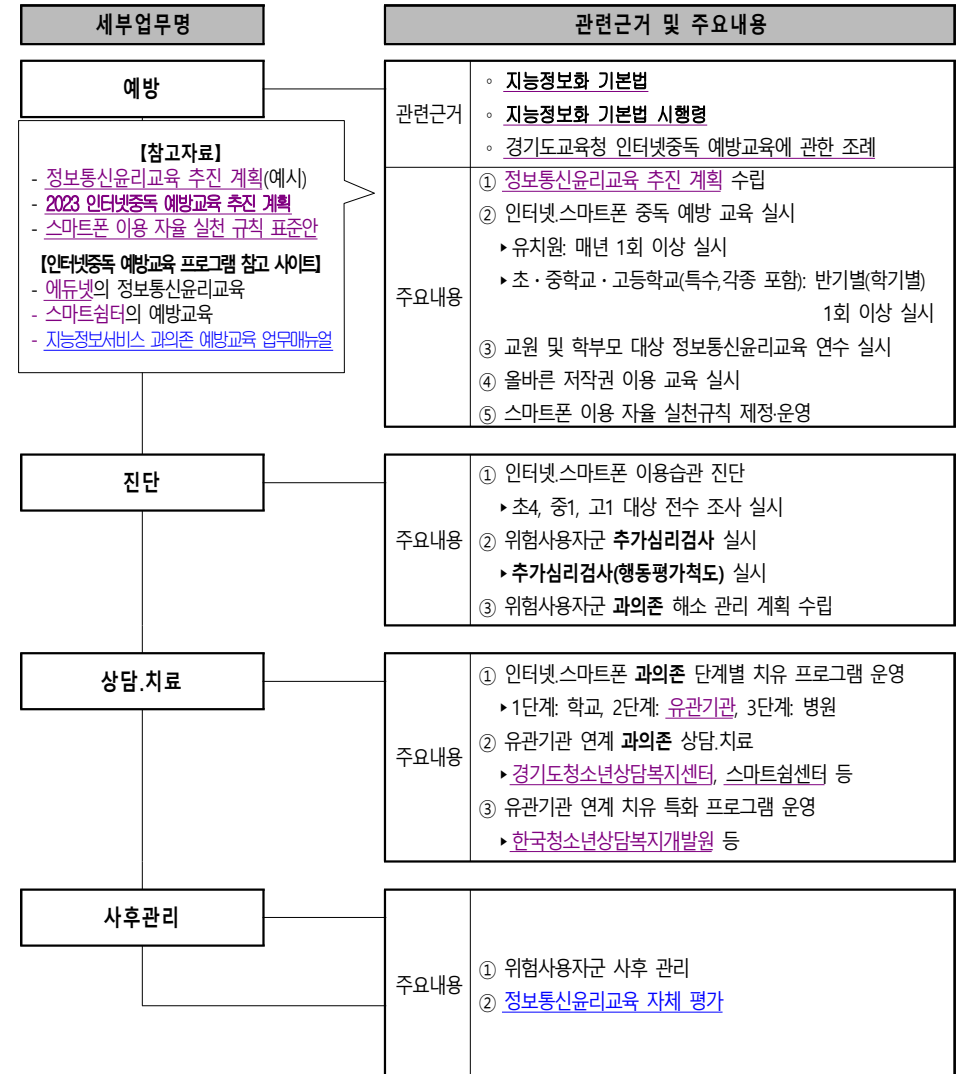
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





8.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 정보의 건전한 활용, 유해 정보로부터 학생 보호, 교사·학부모의 학생 정보통신 윤리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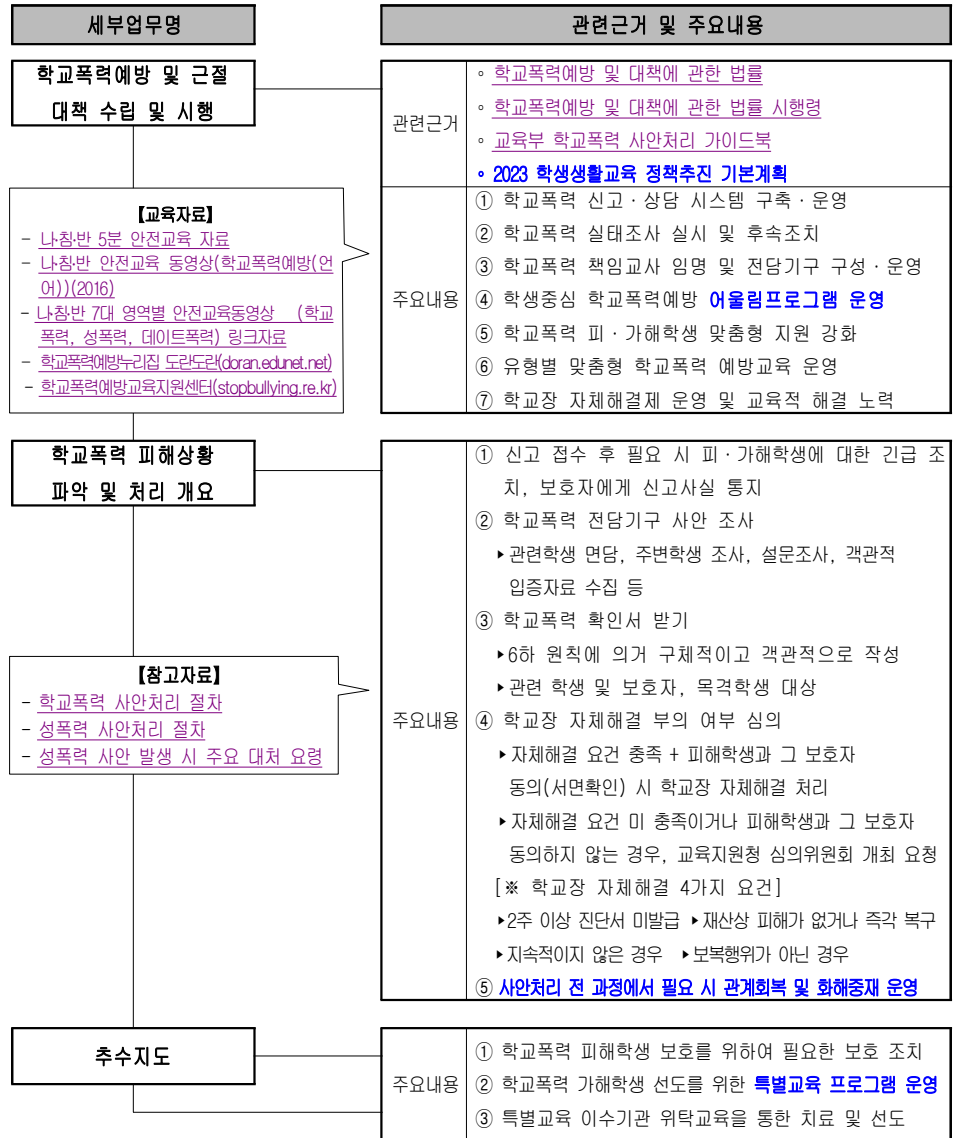


제 3 편 생활안전

업 무 명	생활안전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업무개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폭력·아동학대·학생자살사고 예방, 통학차량·통학로 물놀이 안전, 학생보호인력·출입통제시스템·CCTV 운영 관련 업무	
주요내용	단 위 업 무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6. 물놀이 안전
	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7.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운영
	3. 학생자살사고 예방	8. 학교출입관리
	4.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9.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5. 안전한 등하곳길(통학로) 만들기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 2023 위기학생지원 계획 ○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18) ○ 아동학대 예방 :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교육부 2023.5.) ○ 학생자살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살 위기관리 프로토콜(교육부, 2011)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 학생보호인력 운영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학교 출입통제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 학교내 CCTV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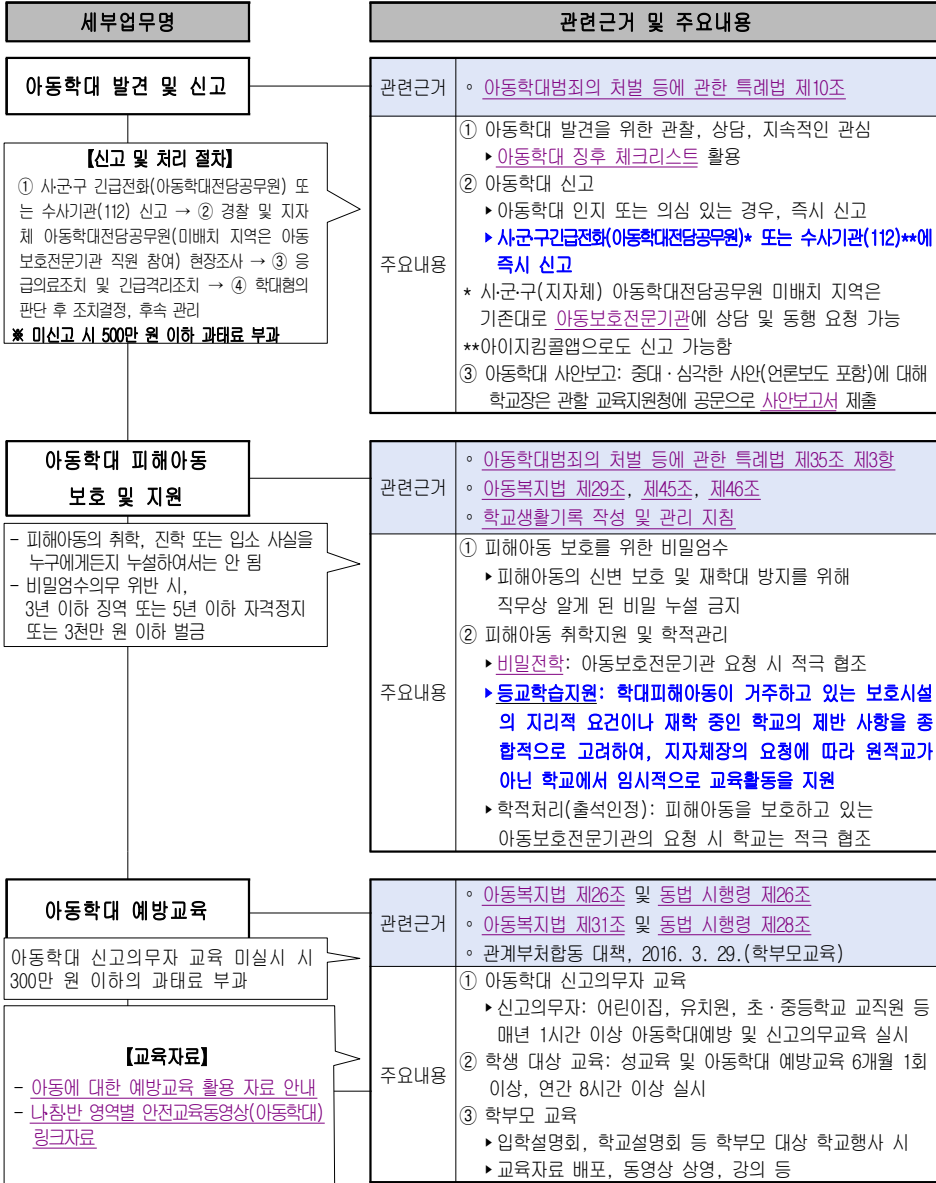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생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노력, 공정하고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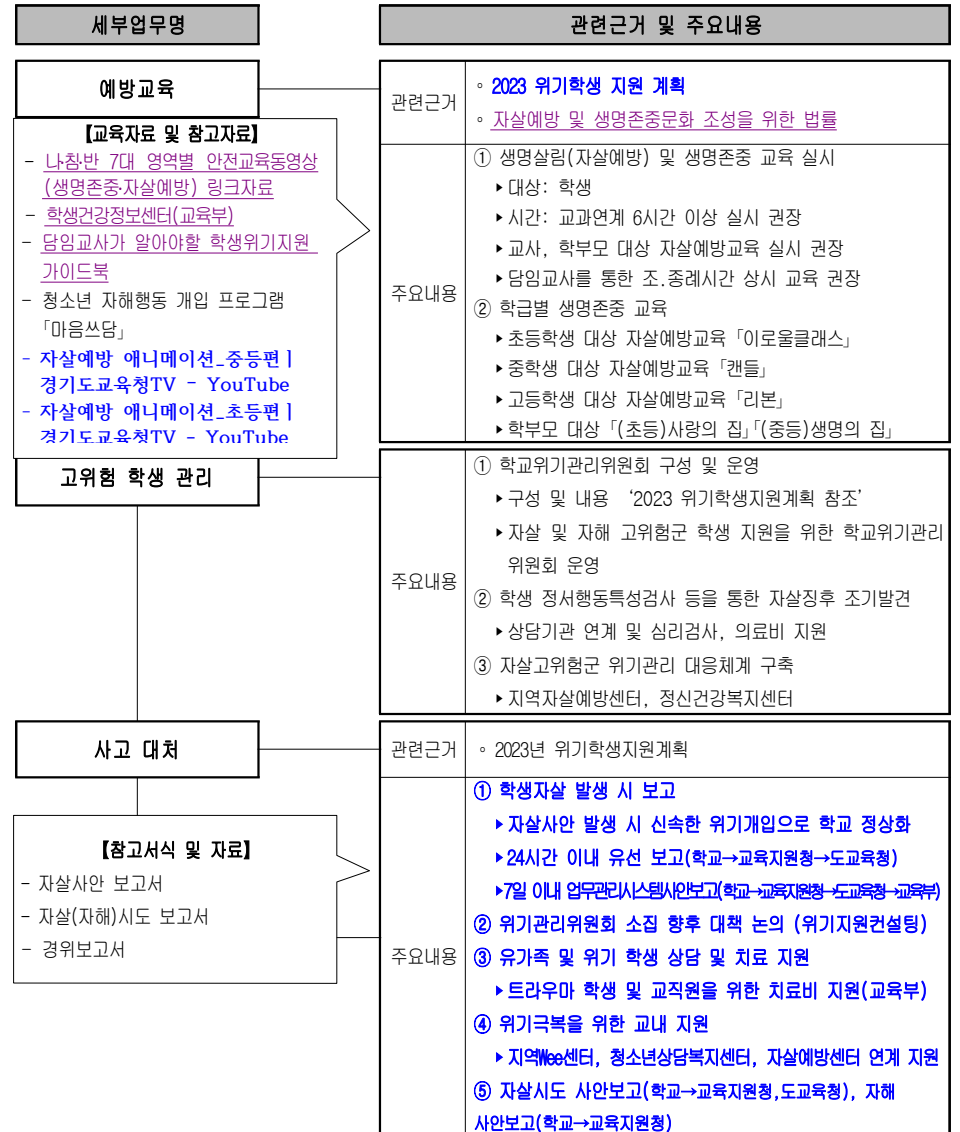
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관리를 통한 학생안전 보호와 아동 복지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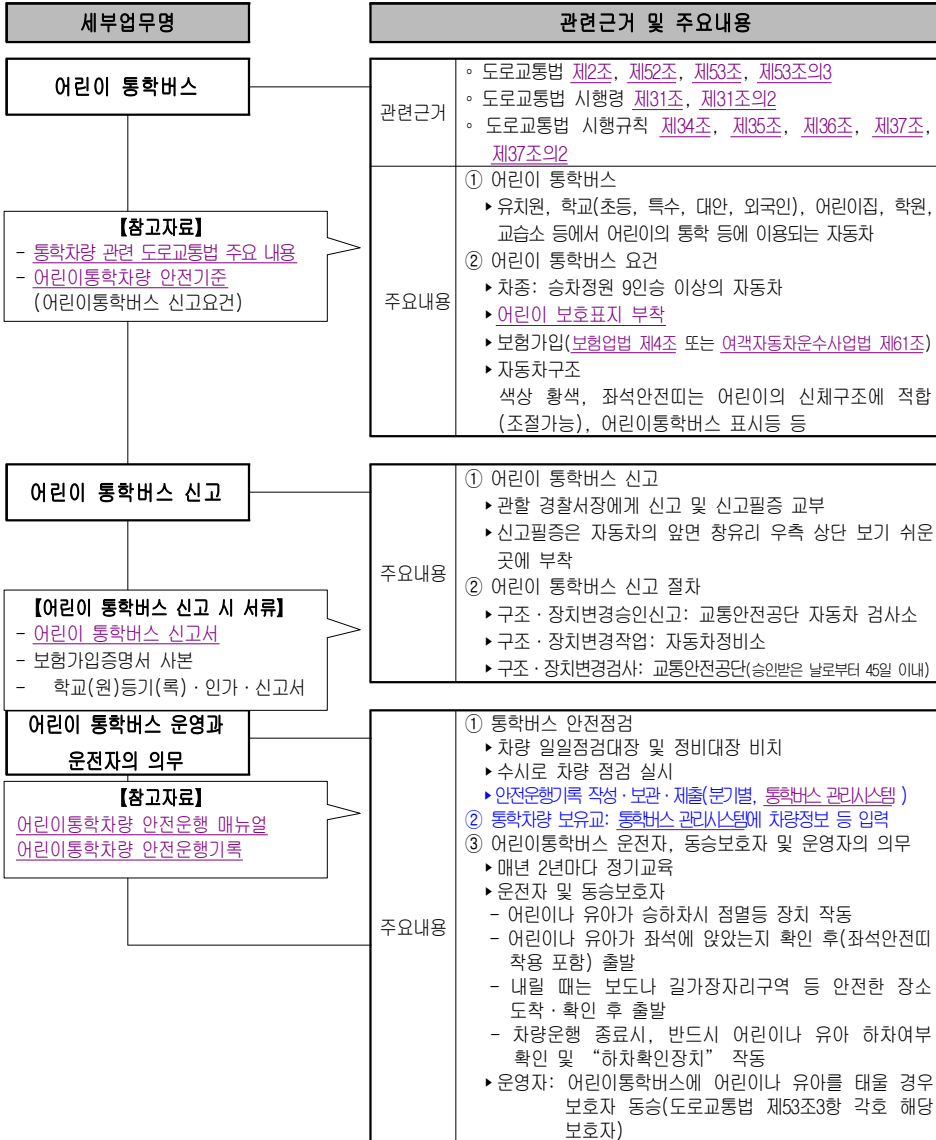
3. 학생자살사고 예방

생명살림교육 강화로 학생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학생 자살 및 자살(자해)시도, 고위험군 위기관리 대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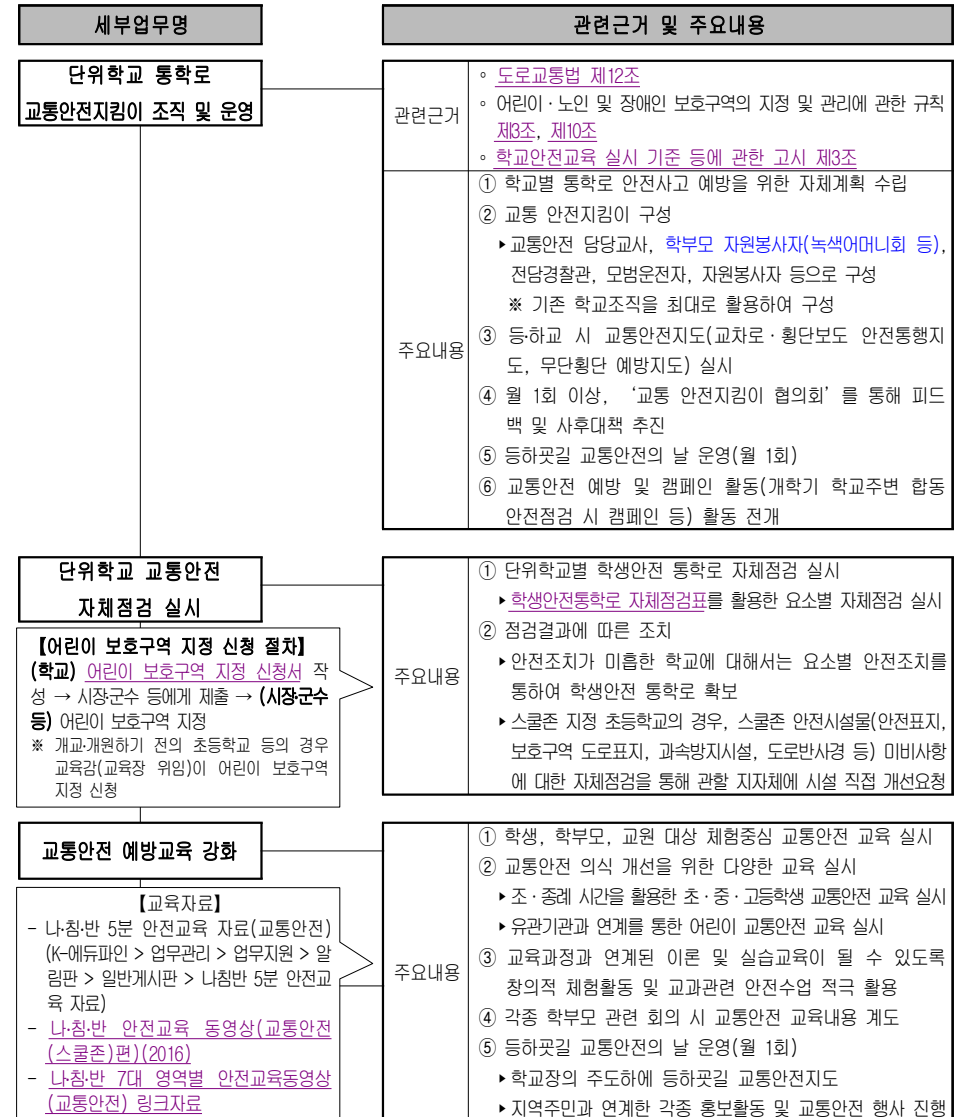
4.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및 신고절차와 운전자·운전자의 법적 의무 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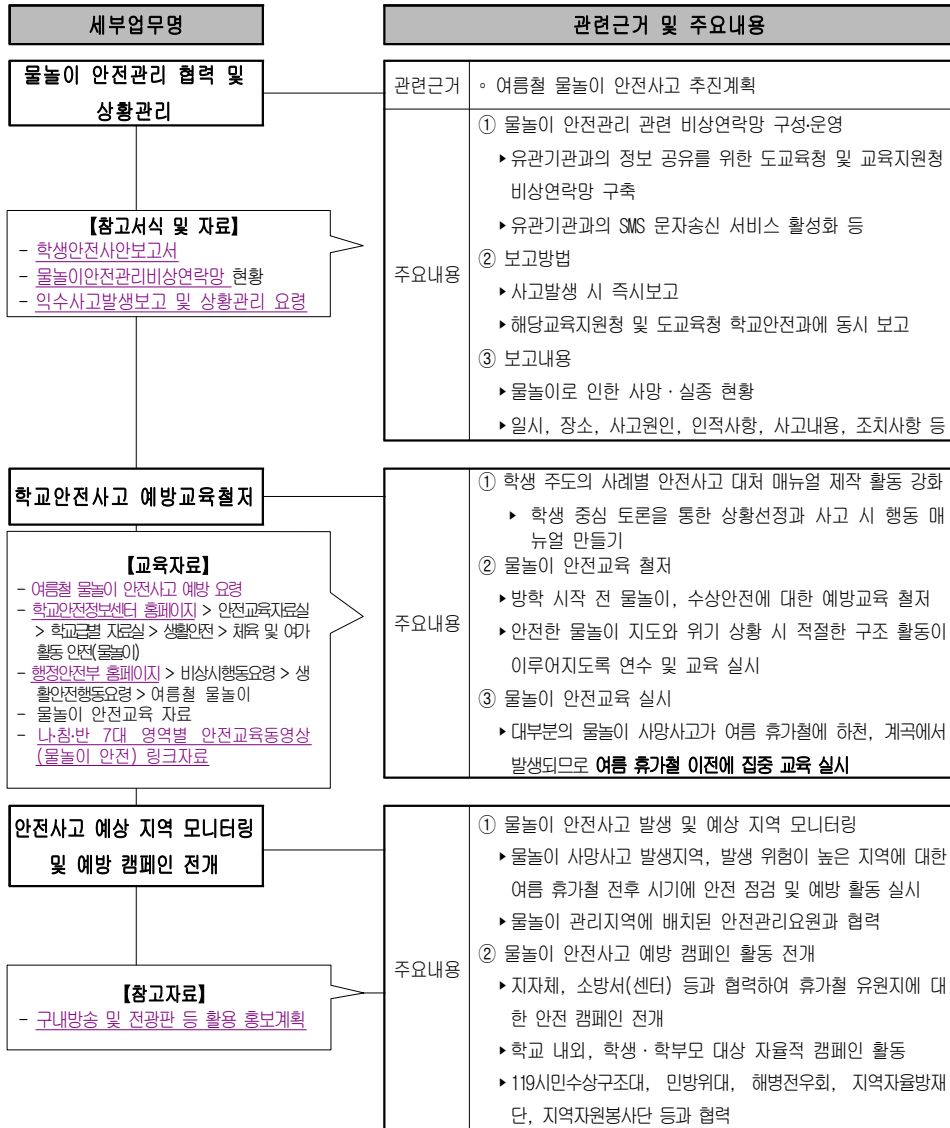
5. 안전한 등하굣길(통학로) 만들기

학생의 등하굣길 생활 속에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 구현 및 등하굣길 위험요소 실태조사 및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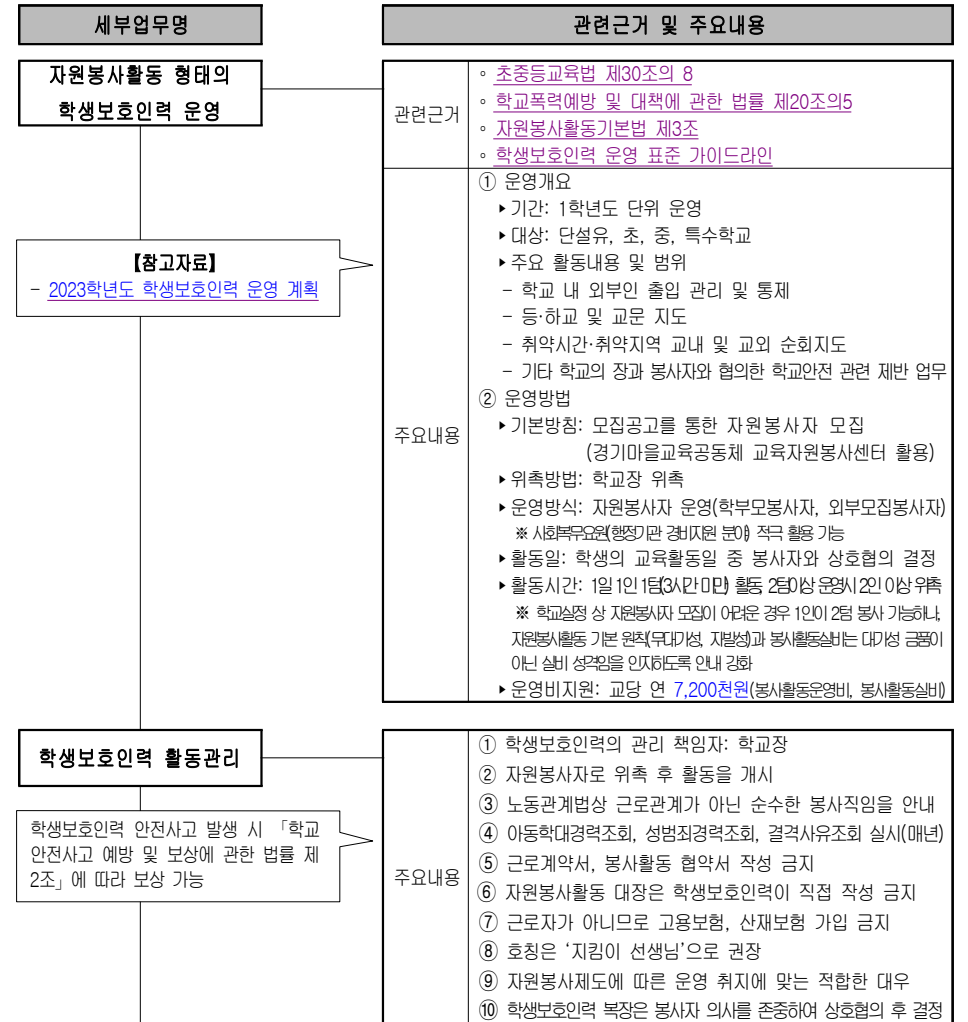
6. 물놀이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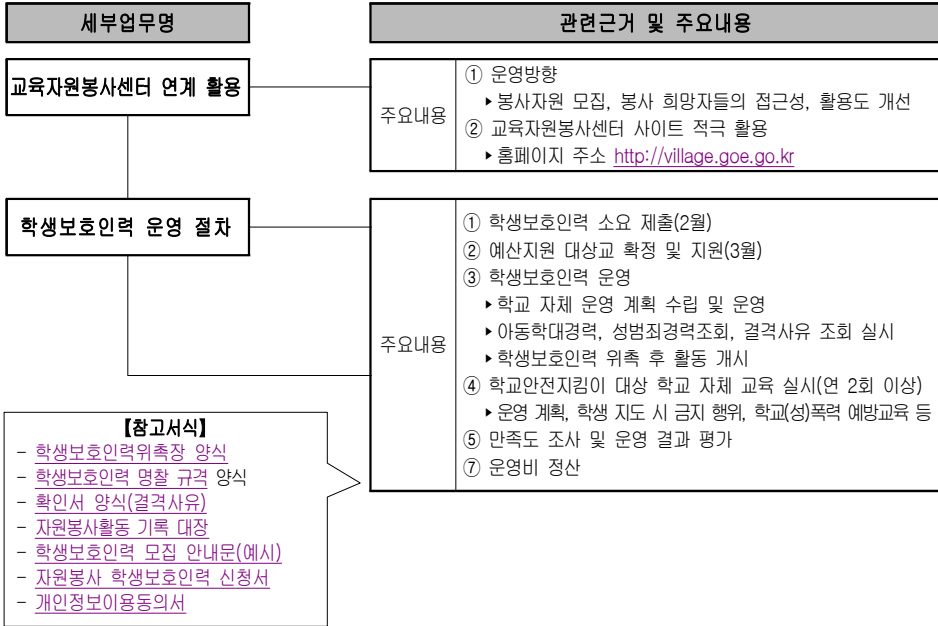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 안전교육이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부각되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7.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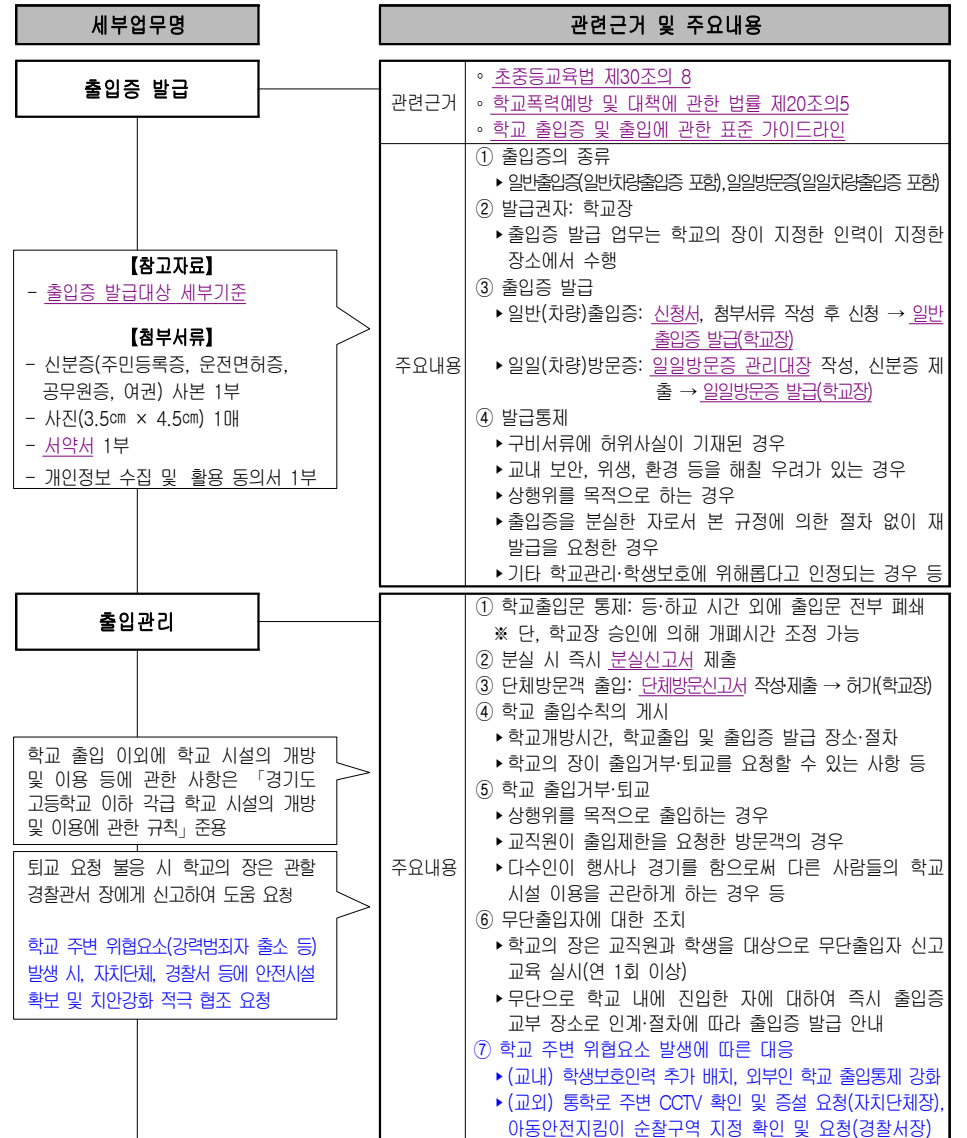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안전대책)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배치 등)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보호인력 배치





8. 학교출입관리

학교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 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출입증 발급 시 준수사항	① 점검확인 ▶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 확인·점검(연 1회 이상) ② 대장관리 ▶ 출입증 관리대장 기록 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주의 ③ 관리, 회수·반납, 폐기: 관리대장에 의한 반납 및 폐기

9.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과 외부인 무단출입 단속을 위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를 통한 학생의 안전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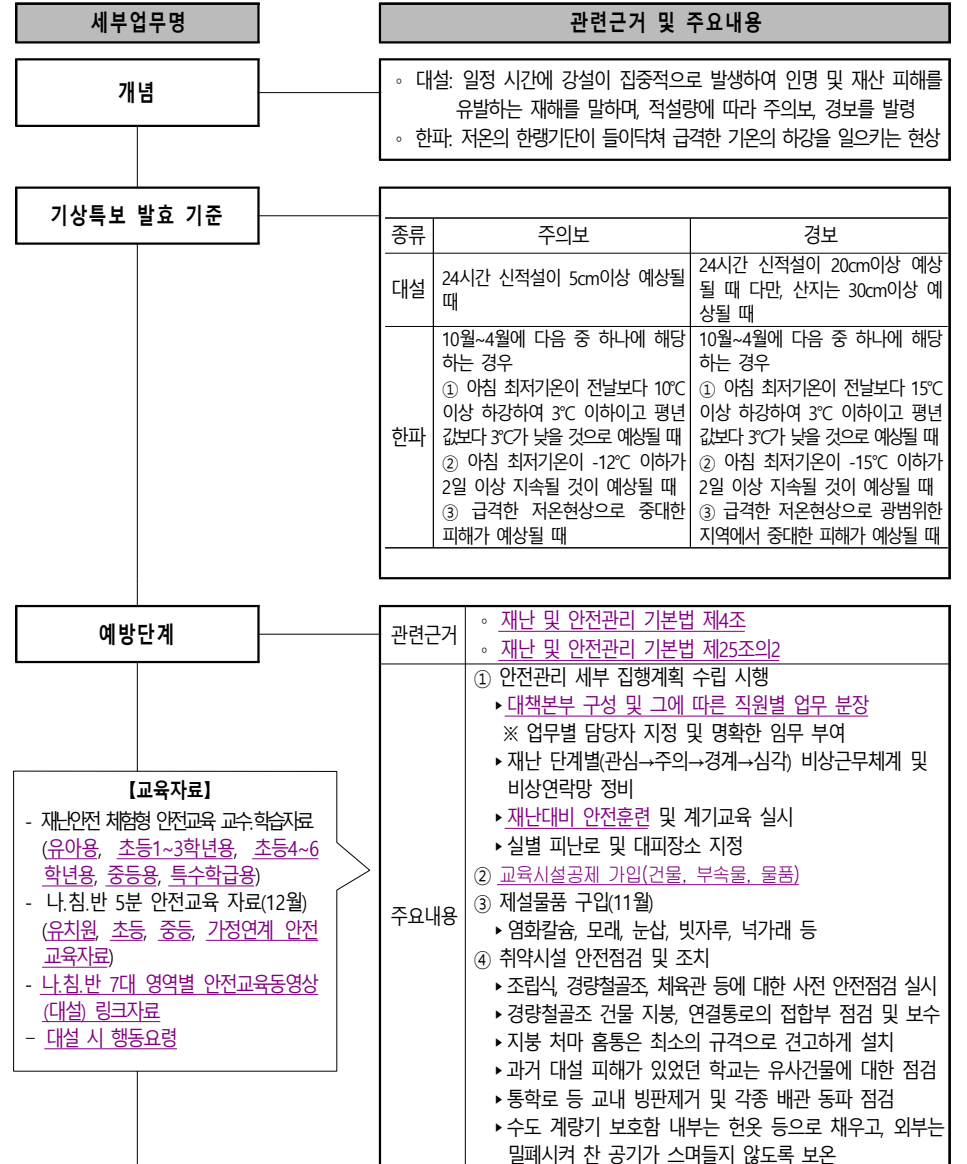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교내 CCTV 설치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5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6~69조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치 기본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사양: 200만화소 이상 권장 ▶ 설치장소: 안전생활 취약지역(출입구, 사각지역, 중요지역 등) ② 사전 의견수렴(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공간(운동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사전의견수렴 생략 가능 ▶ 실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특정실(교실, 식당, 강당, 실험실 등)의 경우 매년 사용 대상자가 전연 동의하는 경우에만 운영 <p>[참고] 국가인권위원회「교실내 CCTV 설치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 (2012.2.23.)</p> <p>‘교실 내 CCTV 설치행위는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설치·운영 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목적,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카메라 대수, 위치 등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사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p>※ 교문 또는 교문인접 필수 설치</p>
CCTV 운영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제76조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치·운영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에 따라 주·적 점검 실시 (월별 또는 분기별) ▶ CCTV 업무 관련자(책임관,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전담자 등)에 대해 제반 교육 실시 ② 영상정보 열람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주체는 자기 개인정보(영상정보)의 열람 청구 가능 ▶ 열람 청구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관리 ▶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제한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제3자에게 제공가능 ③ 영상정보 보유기간: 최소 30일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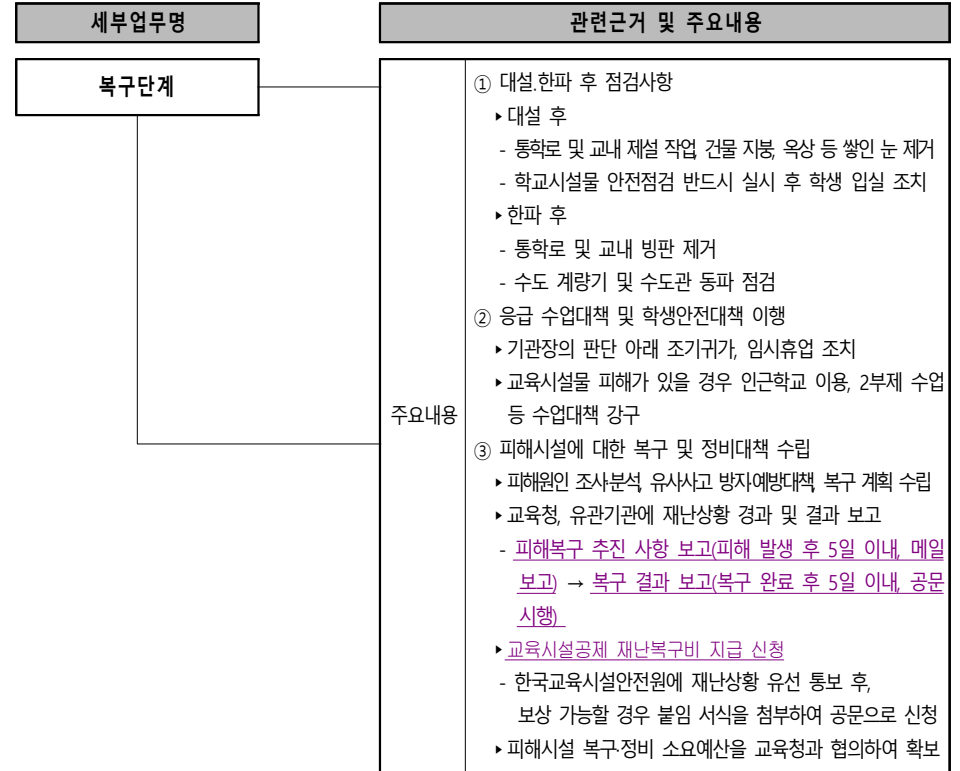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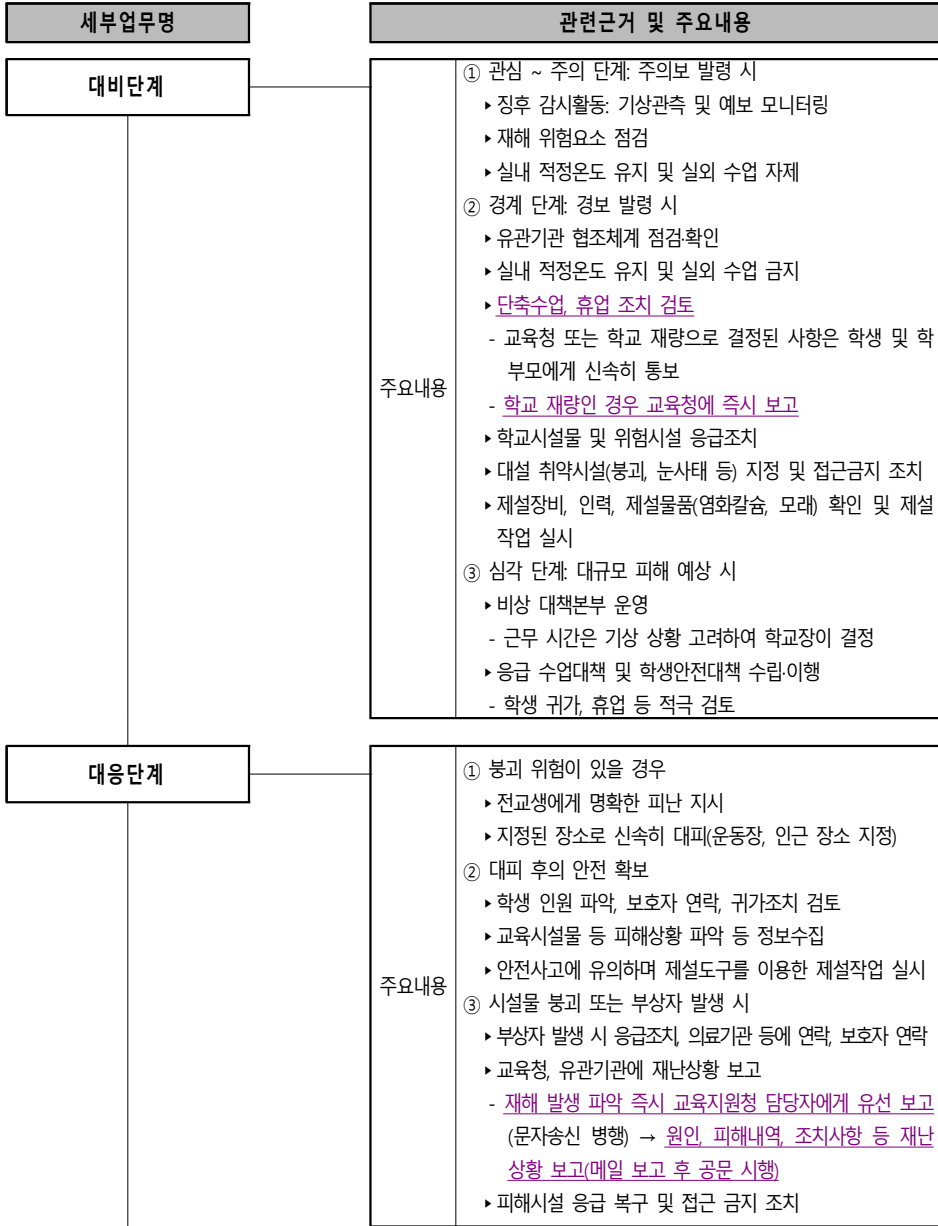
제 4 편 재난안전

업 무 명	재난안전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식품위생법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업무개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교육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재난 유형별로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안내	
주요내용	단 위 업 무	
	1. 대설·한파	8. 화재
	2. 폭염	9. 유해화학물질
	3. 풍수해(태풍, 집중호우, 강풍)	10. 식중독 발생 시 단계별 대처요령
	4. 지진(지진해일)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 황사	12. 민방위 훈련
	6. 미세먼지	13. 교육시설공제
	7. 오존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교육청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23) ○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미세먼지)(경기도교육청, 2021)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22)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안전 - 안전교육자료)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포털(재난 시 행동요령, 생애주기 안전교육자료 탑재)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경기도교육청, 2015.)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학교안전 - 안전교육자료) ○ 나.침.반 5분 안전 교육자료(업무관리시스템 - 업무지원 - 알림판 - 나침반교육) ○ 나.침.반 안전교육동영상 자료(유튜브 검색 가능) ○ 미세먼지: 수도권대기환경청 ○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교육연구시설공제 관련) 	

1. 대설·한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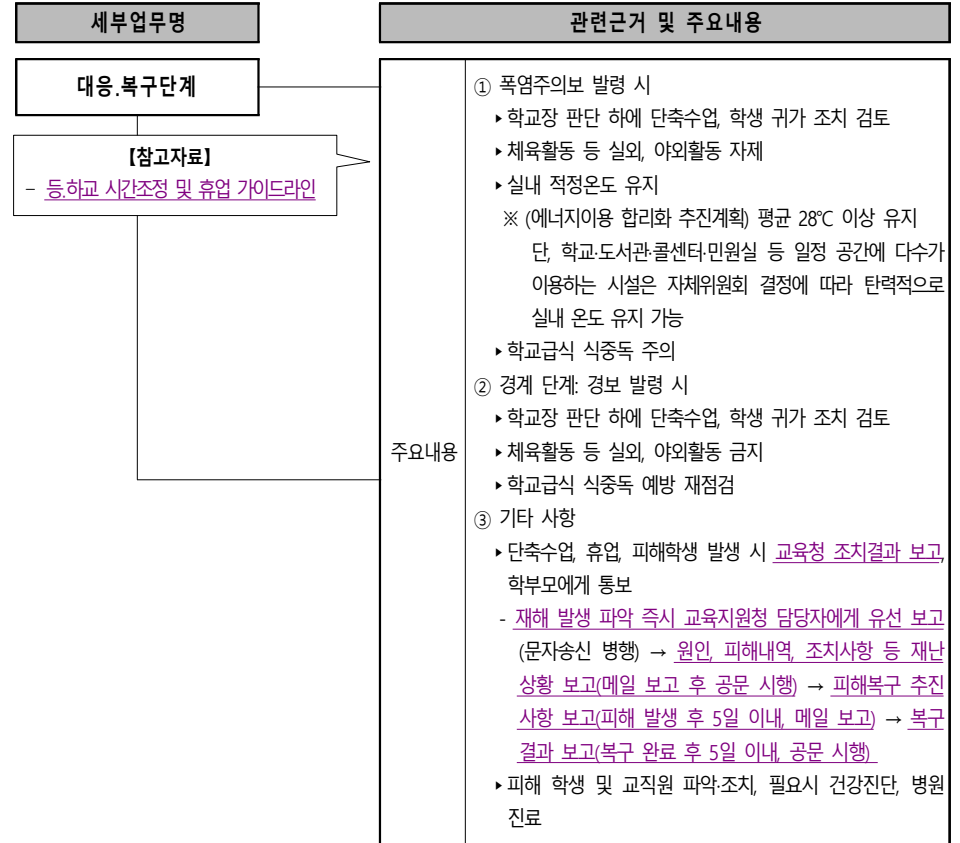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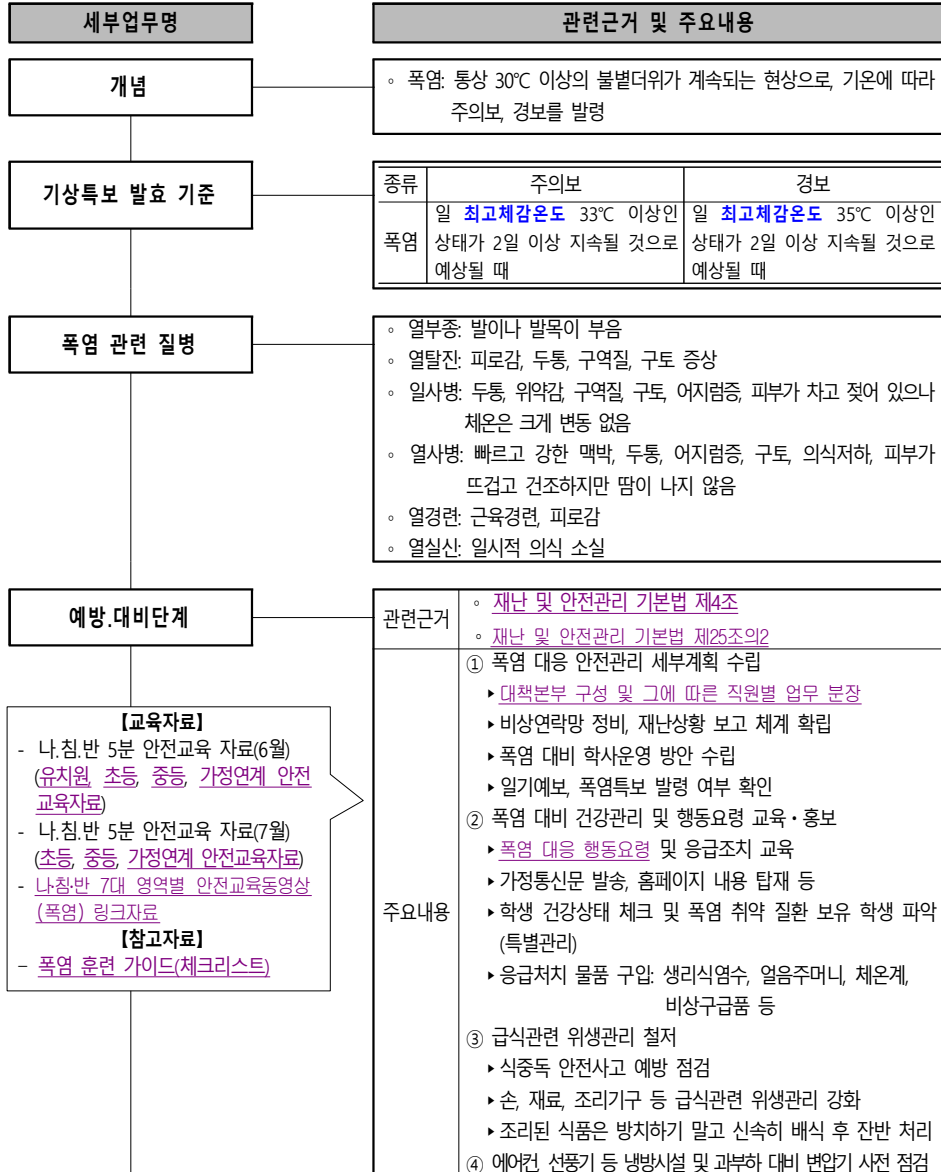
폭설·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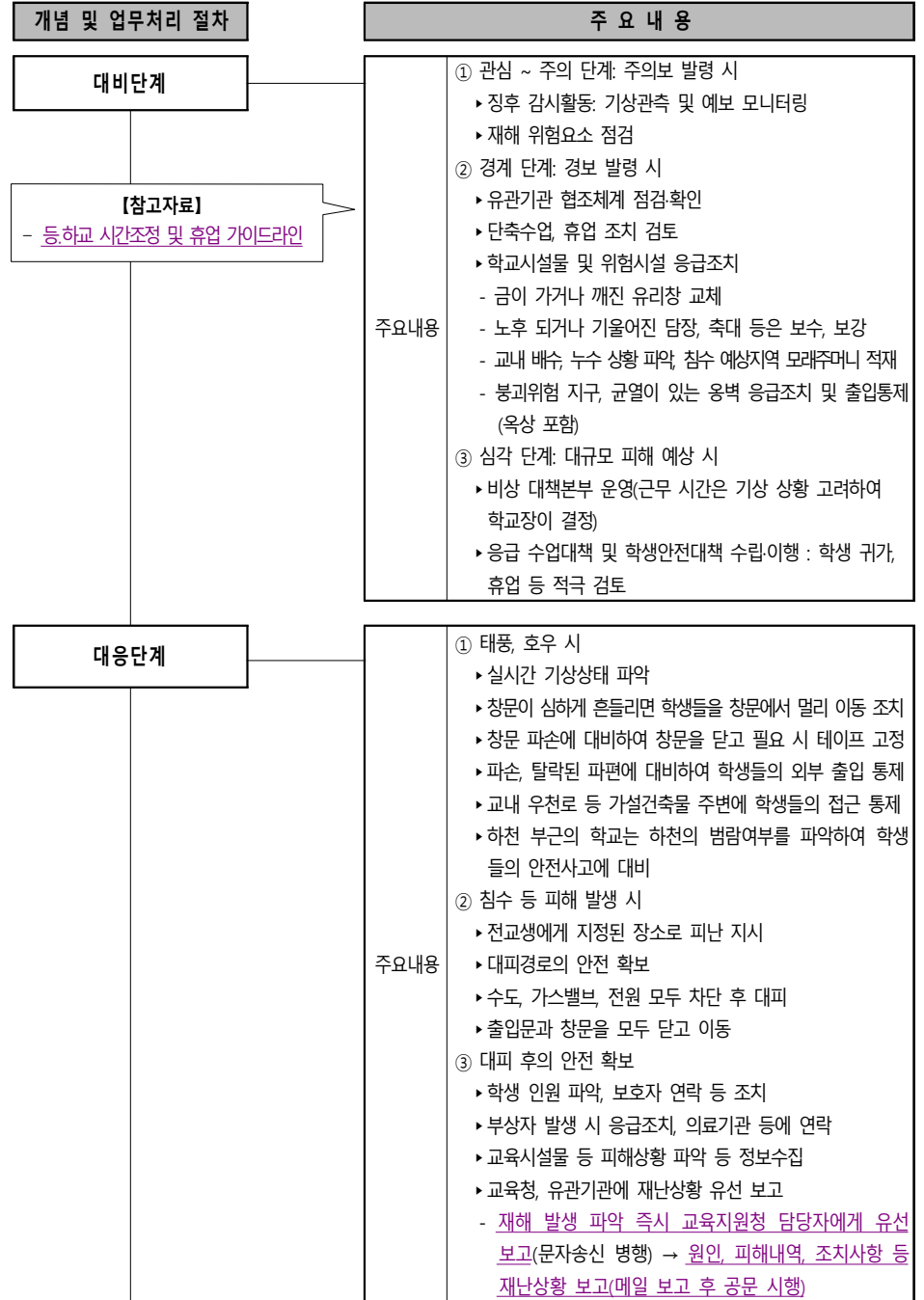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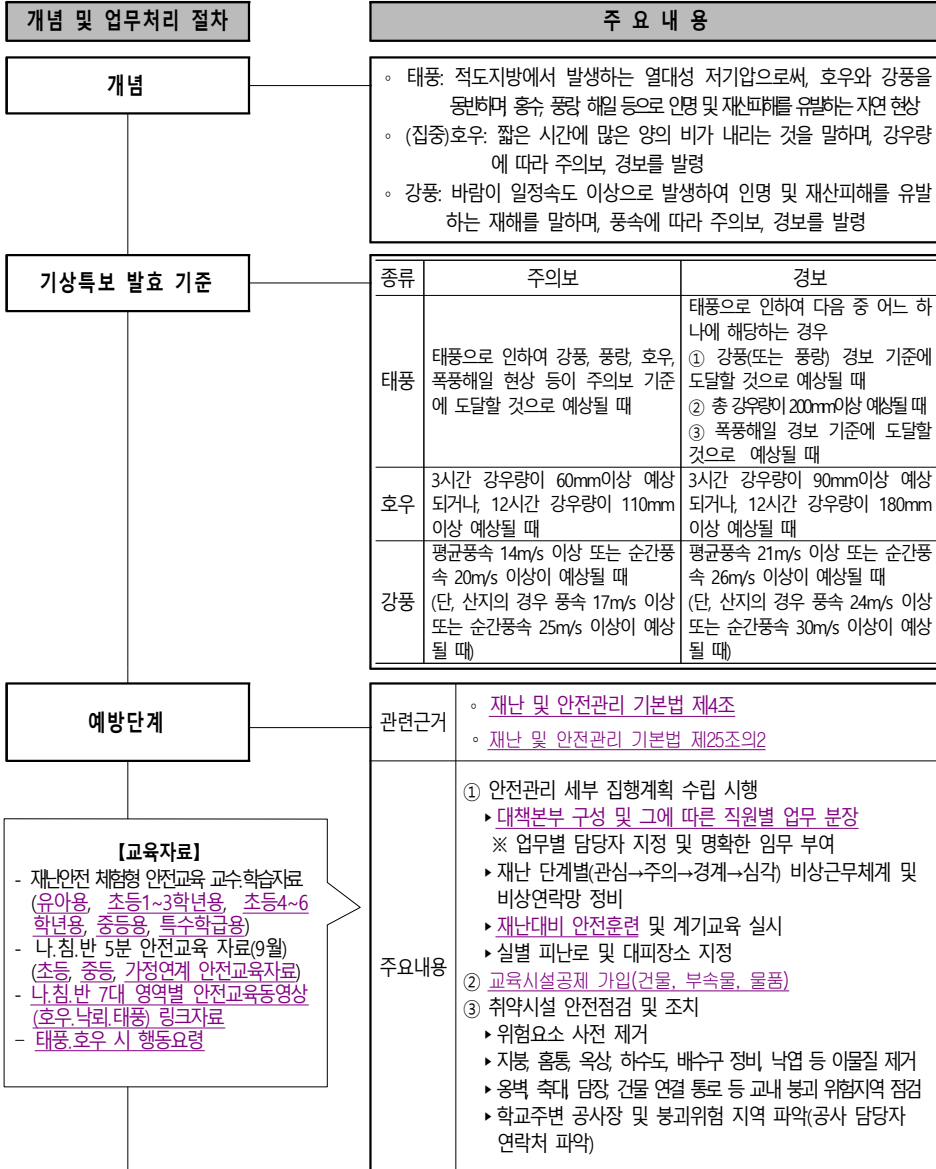
2. 폭염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3. 풍수해(태풍·집중호우·강풍)

풍수해(태풍·집중호우·강풍)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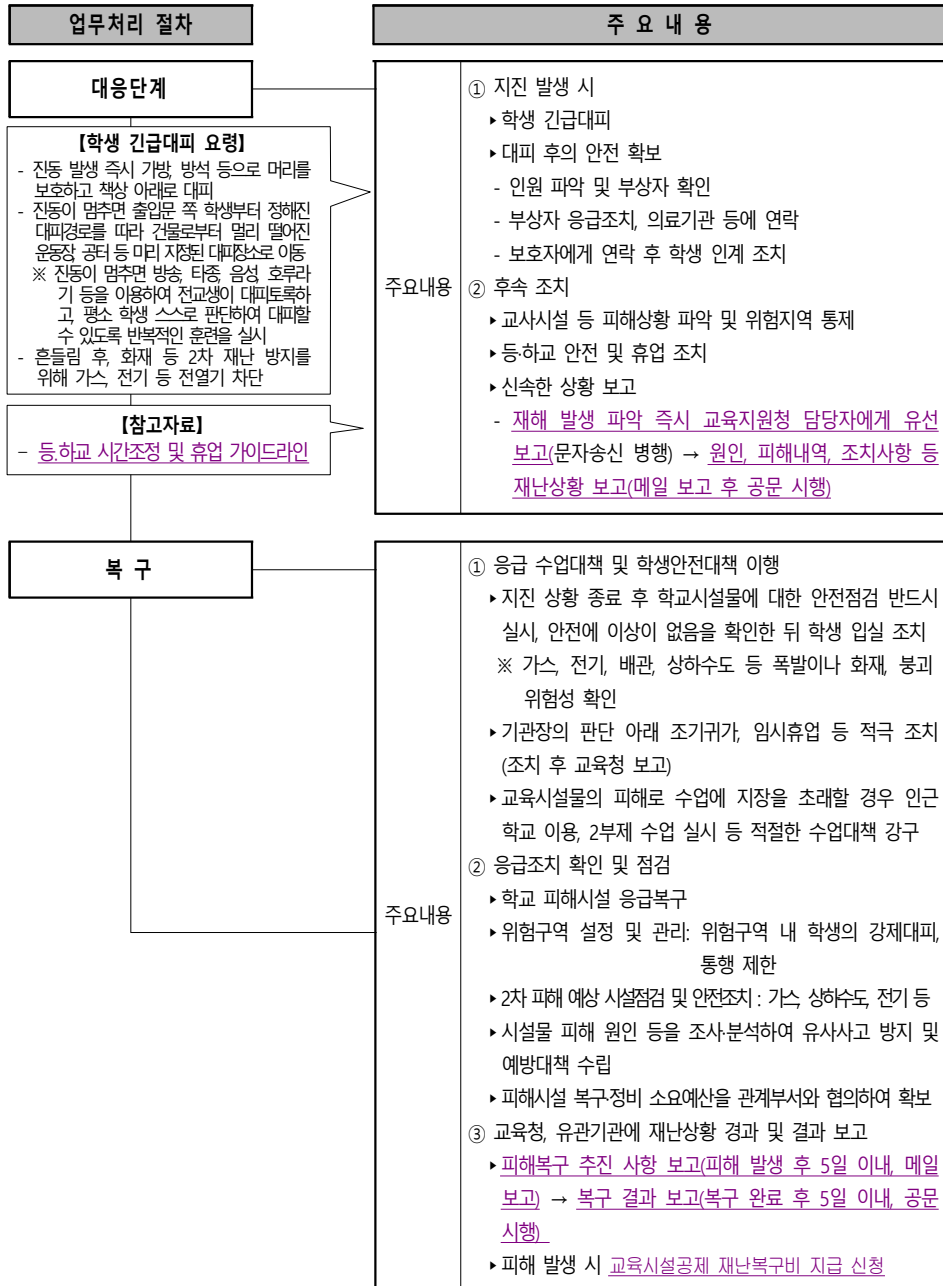


개념 및 업무처리 절차	주요 내용
복구	<p>① 피해상황 확인 및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액 산출, 피해 지역 접근 금지 라인 설치 ▶ 전기, 가스, 수도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후 사용 ▶ 피해시설 응급조치 및 <u>학교시설 안전점검</u> ▶ 교육청,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경과 및 결과 보고 - <u>피해복구 추진 사항 보고(피해 발생 후 5일 이내, 매일 보고) → 복구 결과 보고(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u> <p>②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의 판단 아래 조기귀가, 임시휴업 조치 ▶ 교육시설물 피해가 있을 경우 인근학교 이용, 2부제 수업 등 수업대책 강구 <p>③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원인 조사·분석, 유사사고 방지·예방대책, 복구 계획 수립 ▶ <u>교육시설공제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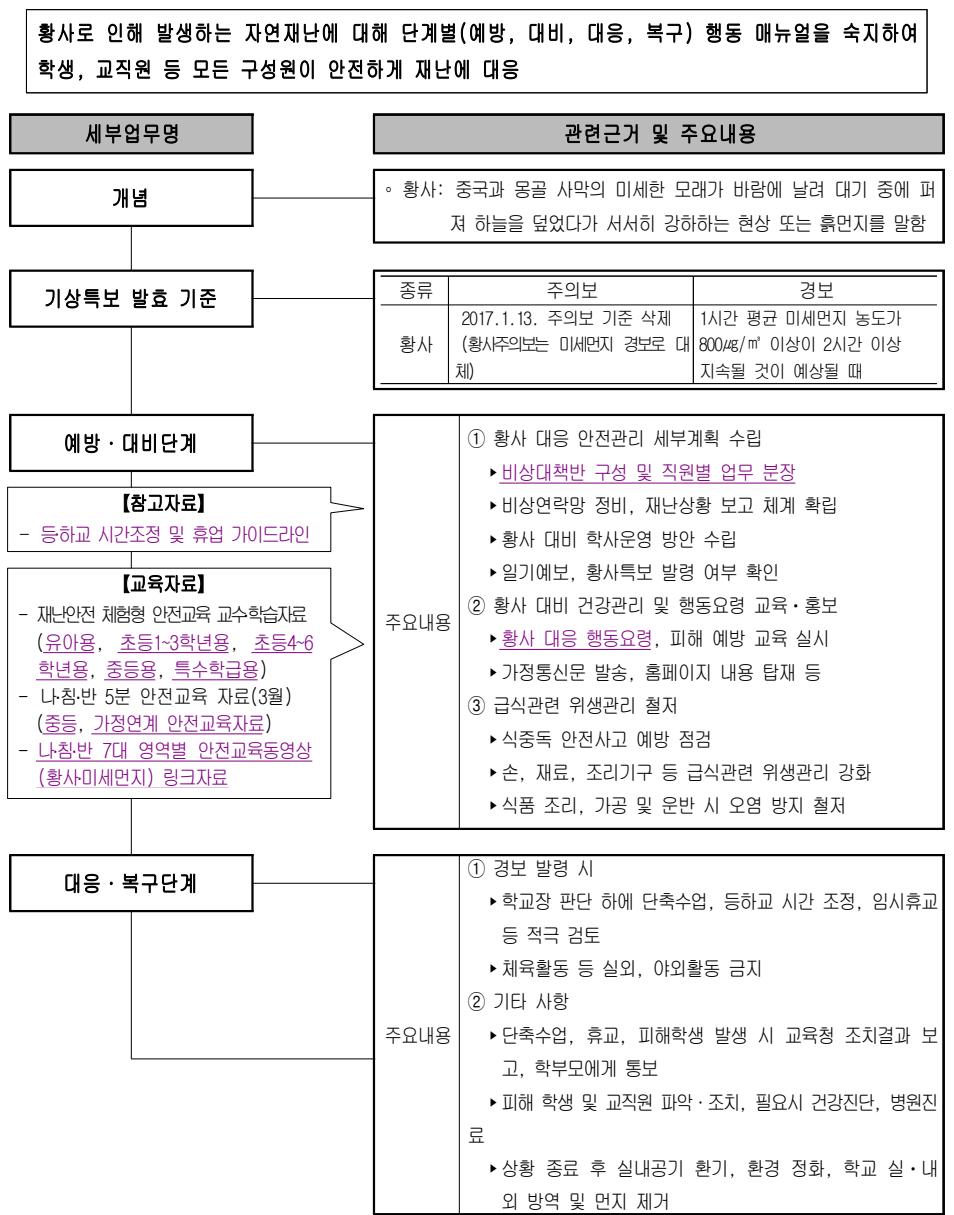
4. 지진(지진해일)

지진(지진해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업무처리 절차	주요 내용
<p>개념</p> <p>【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진의 규모와 진도 계급</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해일(쓰나미): 해저나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바다 밑이 솟아오르거나 가라앉아서 평소와는 다른 높은 파도로 되는 현상
<p>예방단계</p> <p>【교육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유아용, 초등1~3학년용, 초등4~6학년용, 중등용, 특수학교용)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4월) (유치원, 초등, 중등 가정연계 안전교육자료)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육동영상 (지진) 링크자료 - 나.침.반 안전교육동영상(지진해일편) 자료(2016) - 나.침.반 안전교육동영상(지진) 자료(2017) - <u>지진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u> <p>【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진 발생 시 운동장 안전 여부 및 추가 대피처 지정 현황</u> - <u>지진대피소 현황</u> 	<p>주요내용</p> <p>① 안전관리 세부 집행계획 수립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그에 따른 직원별 업무 분장</u> ▶ 학교 실정에 맞는 자체 지진대피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 ▶ 비상근무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실질적인 <u>지진대피 훈련</u> 및 계기교육 실시 ▶ 피난로 및 대피장소 지정 ▶ 위험을 학생 스스로 확인·판단하여 대피하도록 훈련 <p>②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기초, 지반, 균열 등 취약시설 점검 및 조치 ▶ 노후시설물, 옹벽, 담장, 지붕 등 지진 취약시설 점검 및 조치 <p>③ 교육시설물 내진 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교육부 내진 보강사업 추진계획에 따름
<p>대비단계</p> <p>【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u> 	<p>주요내용</p> <p>① 지진 발생 전(징후 발견 또는 주의보 발령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후 감시활동: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기상청, 안전디딤돌 등 기상수신 서비스 사전 가입 ▶ 비상근무체계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학교시설물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 방재물자 구비: 대피유도 장비, 구급장비, 비상배낭, 방송장비 등 ▶ 인접 학교 또는 임시시설 등 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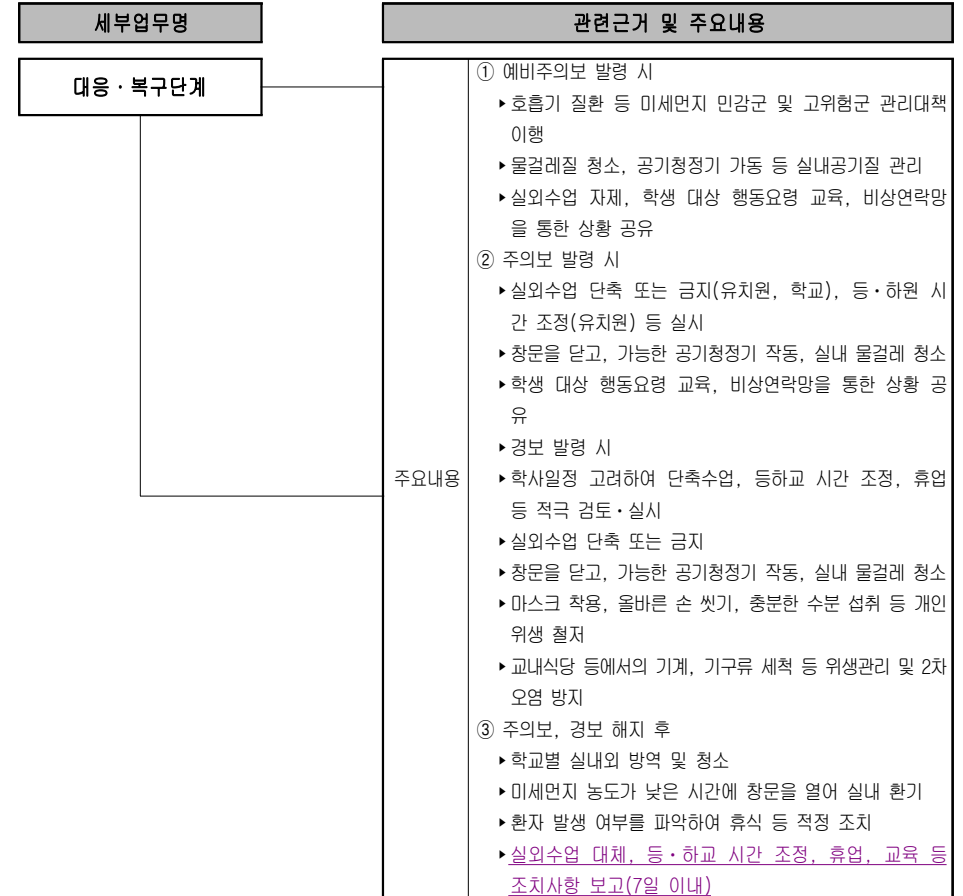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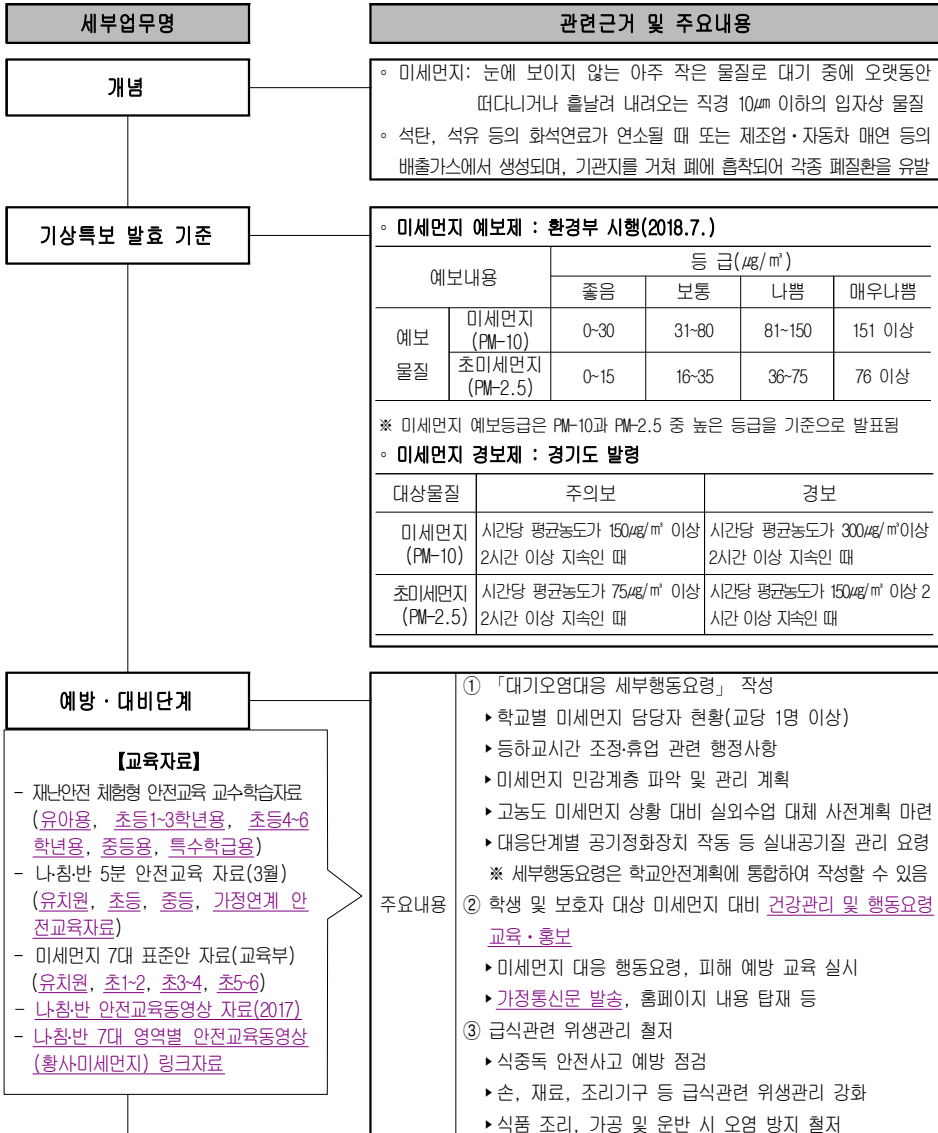


5. 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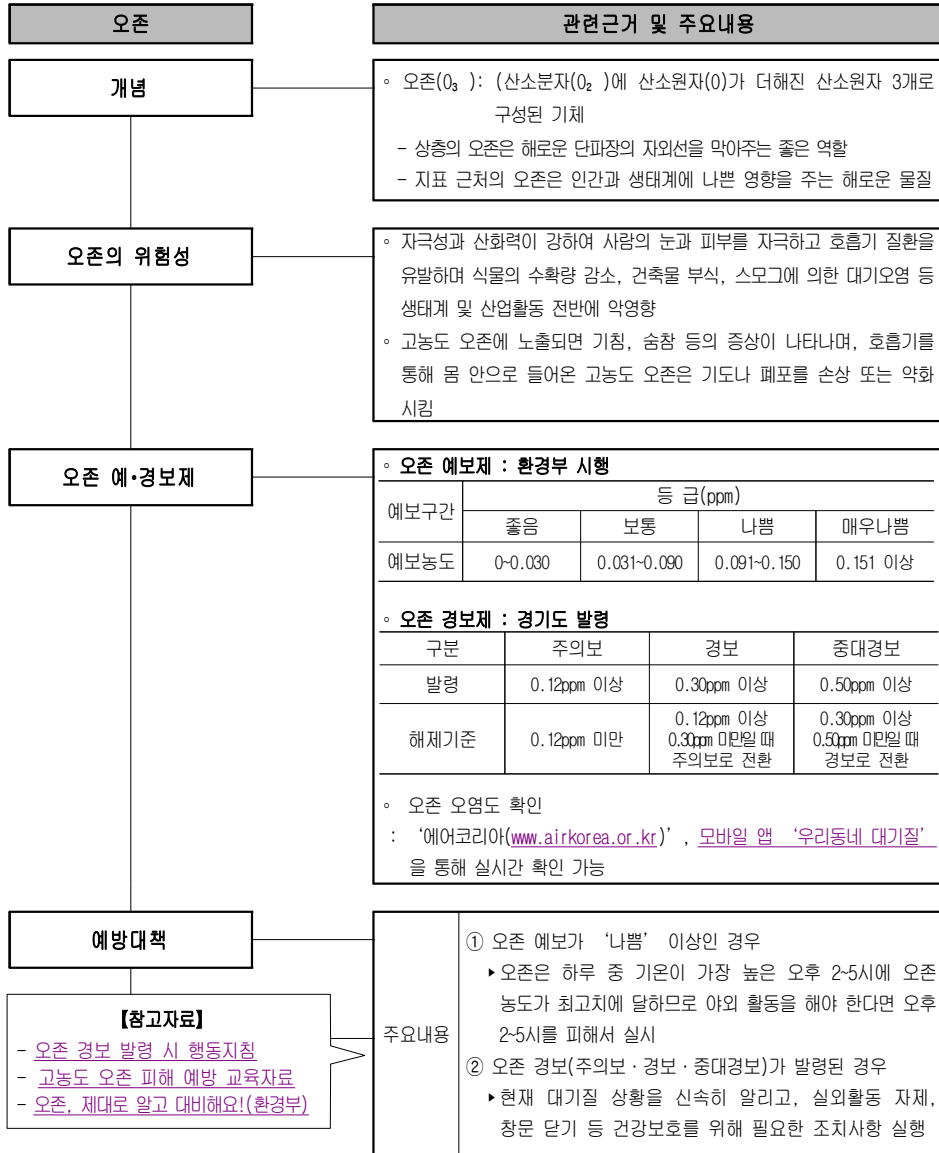
6.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제8조를 근거로 미세먼지 예·경보 기준 변경을 반영함(2018.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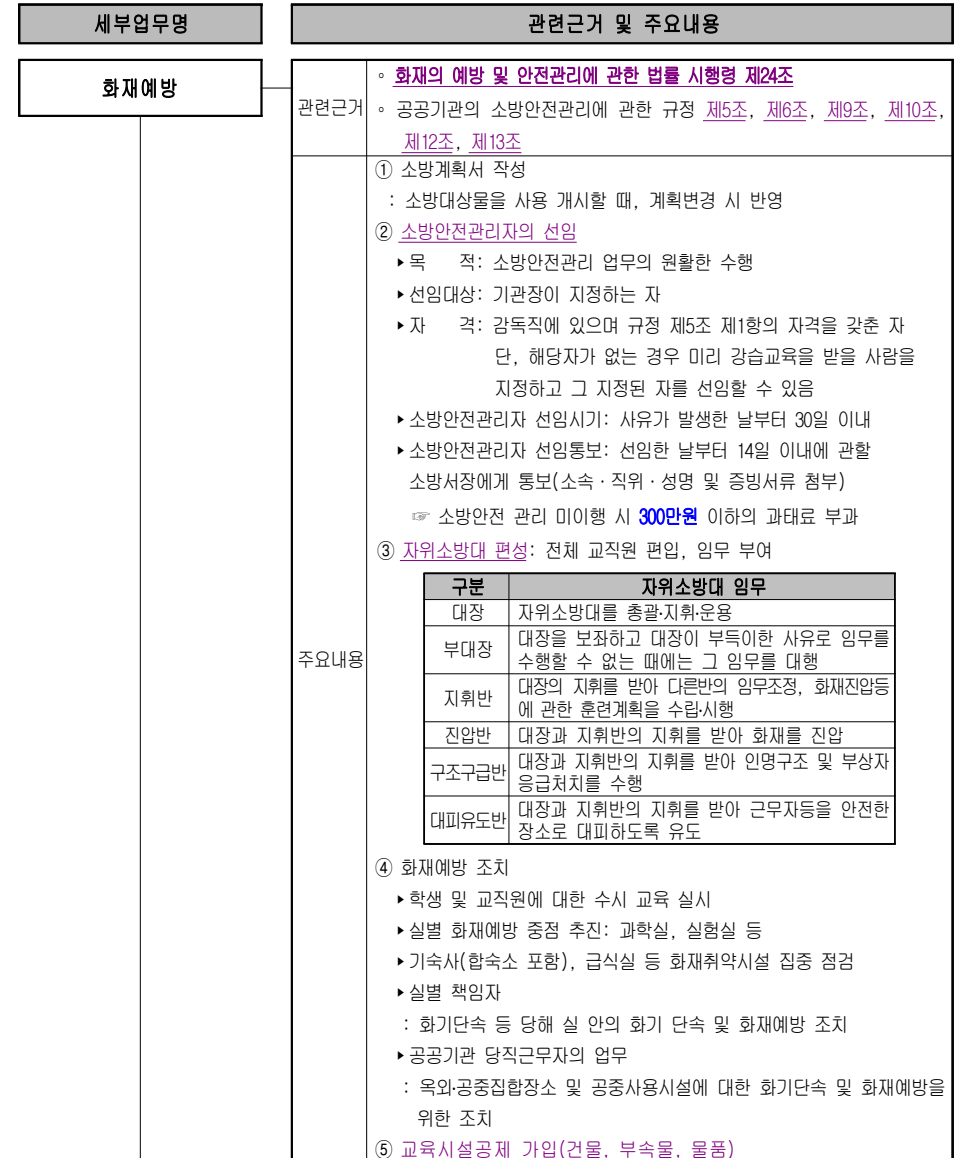
7. 오존

오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



8. 화재

화재로부터 인명, 시설물, 물품의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세부업무명

대비

【교육자료】

-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유아용, 초등1-3학년용, 초등4-6학년용, 중등용, 특수학교용)
- 나침반5분 안전교육 자료(유치원) (5월, 7월, 10월, 11월)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초등)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중등)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가정연계교육자료)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 나침반 안전교육 동영상 (화재안전) (2016)
- 나침반 안전교육 동영상 (화재편) (2017)
- 나침반 7대 영역별 안전교육 동영상 (화재) 링크자료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주요내용	①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이상 실시(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기록부 - 기록보관 2년) 			
	② 소방점검			
	구분	외관점검	종합점검	작동점검
	점검대상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외관점검 대상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 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전기관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단,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생략 가능)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단, 학교의 경우 사용 승인일이 1월·6월 사이인 경우 6월30일까지)	종합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점검서식	소방시설외관점검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점검결과	2년간 점검결과 자체보관	15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15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 방화벽, 내부마감재료 등에 대한 금지행위 명시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 비상구(출입구)용접 등 폐쇄, 통로계단 철책 후 시건장치 등 폐쇄행위 금지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출입구 및 통로·계단에 물건적치, 방화셔터구역 장애물 설치행위 등 금지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틀)철거, 고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훼손행위 금지 ▶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방화구획, 방화문 임의변경, 무창충화 행위 등 금지 				
④ 화재취약시설 집중관리 및 위험요소 사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실 사용자 및 화기 책임자 최종 퇴실 시 전원차단 등 화기단속 ▶ 건물 누수 발생 시 누수 원인 제거 및 전기안전점검 실시 ▶ 화재 취약시설(폐휴지 보관 창고 등) 전기차단, 출입통제 및 잠금 철거 ▶ 가전제품 및 콘센트 주변 먼지와 인화물 제거 				

세부업무명

대응

대피 시 방화셔터가 내려왔을 경우 → 방화셔터의 비상구 열고 이동(소방훈련 시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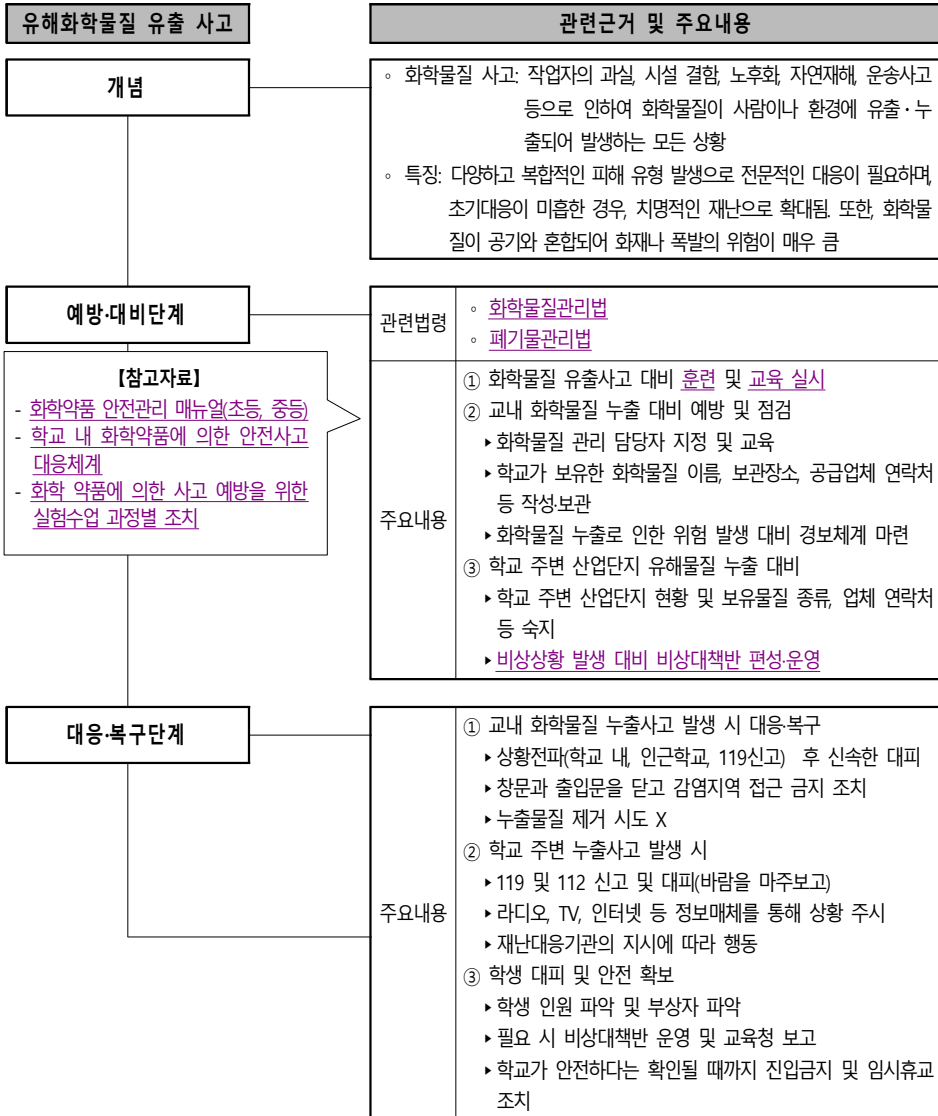
복구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① 소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화재경보, 대피, 소화 등 관련 조치 실시 ▶ 화재 비상벨이 울리면 미리 지정된 담당자가 즉시 교내 화재 발생경보 발령 ▶ 화재 발생여부 파악 후 119 신고 ②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 ▶ 대피 후 인원 파악 후 응급조치 실시 ▶ 보호자에게 연락, 학생 불만에 대한 대응, 필요 시 학생수가 조치 ③ 학교 대책본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황 파악 및 교육청·유관기관 보고 - 재해 발생 파악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문자송신 병행) → 원인, 피해내역,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 보고(공문 시행)
주요내용	①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물의 화재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인근학교 이용, 2부제 수업 실시 등 적절한 수업대책 강구 ②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피해시설 응급 복구 ▶ 피해시설 복구·정비 소요예산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확보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 ▶ 시설물 피해 원인 등을 조사·분석하여 유사사고 방지 및 예방대책 수립 ③ 교육청, 유관기관에 재난상황 경과 및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복구 추진 사항 보고(피해 발생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 → 복구 결과 보고(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공문 시행) ④ 교육시설공제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재난상황 유선 통보 후, 보상 가능할 경우 불임 서식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9.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에 대해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응



10. 식중독 발생시 단계별 대처요령

구분	수행 사항	비고
평상시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발생 의심환자 모니터링 관련 교직원 사전 연수 실시 • 모니터링 실시 • 식중독 모의훈련 <p>세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발생 의심환자 모니터링 관련 교직원 사전 연수 실시 【부록 1 참조】 <p>식중독 의심환자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유증상자 조사 시 학생들의 동요 및 또래 증상으로 환자가 과도하게 카운트되지 않도록 연수 (반별 손들기 등 부적절한 방법의 조사를 금지토록 교육)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식중독 발생 양상과 증상 등 정확히 안내, 학급에서 학생의 구토를 처리·세척·소독, 학생 손씻기 교육 등 2차 감염 예방 관리 ※ 교내 외부음식물 반입금지 안내장 발송 【부록 9 참조】 ▷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의 병결 학생 수 파악 및 보건교사의 모니터링 등 학교단위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 여부 감시 ▷ 식중독 모의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 식중독 모의훈련 【부록 2 참조】 : 식중독의심환자 발생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하여 식중독비상대책반 모의활동 실시(환자발생시 대처능력 함양) - 유관기관 합동 식중독 모의훈련 【부록 2-1 참조】 :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p><1단계> 발생인지</p>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유증상자 파악(유증상자만 파악·전수조사 아님) • 보건실 방문 학생 관찰 및 보고 → 최초 환자수 집계 • 학교장 주재 긴급회의 <p>세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 방문 학생 관찰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시와 달리 보건실 이용학생 중 동일증세의 식중독 의심환자가 다수 있을시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의심 ⇒ (집단 식중독 발생 인지시점) 보건실 이용 환자수 집계 ⇒ 학교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 보건실은 평소 방문 수준의 학생수 및 증상과 비교 필요 - 가검물 채취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반 도착시까지 학생들이 귀가 보류(보건소 협의) ▷ 담임교사 유증상자 파악 【부록 3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 호소 학생만 조사한 후 보건실로 보냄 -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조사, 전교생 대상 및 학년·학급 전체 대상의 전수조사 및 교내방송, 전체문자, 반별 손들기 등 부적절한 방법 조사 금지 - 환자발생 분포와 원인을 파악, 반별 집계표 → 환자파악 팀에게 제공 	비상대책반 구성원 유관기관

구분	수행 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이송 및 결석, 조퇴학생은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사전 파악(개별 역학조사 관련) - 식중독 증세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관리자에게 보고 <p>▷ 최초 환자수 집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증세의 보건실 이용 학생, 조퇴, 결석 학생수를 합산하여 최초인지 시점 환자수로 집계 - 담임교사의 1차 조사 결과 정리하여 1~2개 학급만 환자 발생 등 특이사항 발견 시(실습, 현장체험학습, 운동부, 간식, 체육대회, 월요일의 경우 주말 결혼식 참석 등) 환자 발생보고에 반드시 포함 <p>▷ 학교장 주재 긴급회의(학교급식식중독 비상대책반) 【부록 2. 1차회의자료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관리자, 부장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행정실장 등 - 내용 : 집단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인지 최종 판단 - 결과 : 집단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으로 최종 결정시 교육청, 보건소(시·군·구청)에 신고 - 신고 시 내용 : 인지시점의 일시, 최초 환자수, 유증상자 동일증세 등 현황, 발생경위, 특이사항 등 - 학교 준비자료 : 유증상자(결석생포함)현황, 반별배치도(정수기, 화장실 위치 포함), 납품업체현황, 식단표 	총괄대책반
<2단계> 발생신고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 및 보고 <p>세부 내용</p> <p>▷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 및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식중독 증상 환자가 2명 이상이면 「집단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의심」으로 판단 → 인지 후 즉시 유선으로 관할 교육청 및 시·군·구청(보건소)에 신고 및 보고 - 서면보고 :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보고【부록 5 참조】 - 즉시 신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식품위생법 제86조) ※ 주의 : 보건소에 단순 문의 시 '식중독 신고'로 오인될 수 있음 	역학조사 협력팀
<3단계>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가동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가동 • 학교급식 중단 조치 결정 <p>세부 내용</p> <p>▷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 【부록2. 2차회의자료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대책반 : 각 대책팀의 지휘·감독,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언론보도에 대처, 치료 및 보상대책 수립, 급식중단 및 대처방안 등(관할 교육청 및 역학조사관 의견 참조) - 환자파악팀 : 기 파악한 최초 환자 추이 및 일일추가 환자발생 현황 파악 - 환자이송팀 : 응급환자 등 발생시 환자후송, 입원학생 관리 	비상대책반 구성원

구분	수행 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조사협력팀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검체채취, 소독 등 업무 협조, 학교급식식중독 발생보고 및 결과보고 - 학사대책팀 :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협조 유도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등 <p>▷ 학교장 주재 급식 중단 조치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원인파악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급식 잠정 중단 ※ 급식중단 여부는 역학조사반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단, 급식시간이 촉박할 경우 역학조사반 도착 전에 학교장이 결정) ※ 급식중단 당일 대용식 구입 및 배식계획 수립 시행 - 대체 급식 마련(학교운영위원회), 가정통신문 발송(학교 알리미 시스템 이용) 【부록 9-1 참조】 ※ 학교내 정수기 사용금지 결정 및 대처방안 마련 ※ 급식중단 기간의 개인별 도시락 및 음용수 지참,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대책, 끓인물 제공 등 대책 마련 	
<4단계> 원인(역학)조사 [보건당국]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협조 • 언론보도 대처 <p>세부 내용</p> <p>▷ 식중독 원인조사 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식 및 환경검체(조리도구, 음용·조리용수 등) 수거 • 음용수(정수기)채수 협조 : 층별 정수기 위치 등 안내 ※ 보존식 144시간 보관 준수, 수거 시점으로부터 6일 이내의 보존식만 제공하며, 수거 확인서 징구, 보존식(실제 제공된 식단)과 보존식 기록지 일치 여부 확인 ※ 보존식 훼손 금지 <p>▷ 식중독 역학조사 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조사관 지시에 따라 필요사항 협력(환자규모, 증상 파악) : 역학조사협력팀 가동 - 설문조사 및 채변검사(대변검체, 직장도말검체) 협조 • 학생 : 발생규모에 따라 한 장소에 전교생 또는 환자를 집결시켜 일대일조사 또는 문항별 설명 후 반별 조사, 유증상자 채변검사 협조(집결장소 제공) • 급식실 :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자 협조 - 외부반입 음식, 학교주변 판매식품 등 식중독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식품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환례정의에 필요한 임상증상 중 '실사의 정의 : 24시간내 3회이상의 수양변이 있는 경우(세계보건기구현장지침) 또는 250g 이상의 무른변이나 수양변이 있는 경우로 함 <p>▷ 학교 협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조사 종료 전까지 보건소와 협의하여 학생 귀가 보류(단,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 이송), 학생 및 학부모 심리적 안정 도모(상황설명, 치료 내용, 치료비 	비상대책반 구성원

구분	수행 사항	비고
	<p>대책 등을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 방문환자 역학조사 전 환자 약물투여 금지 - 급식실 현장보존 및 원인규명 방해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기, 지하수, 물탱크, 칼, 도마, 행주, 환경가검물 등 소독 및 청소금지 • 급식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p>▷ 언론보도 대처【부록 6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대응창구 반드시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학교관리자로 지정-운영 ※ 여러 교직원들이 각각 자료를 제공할 경우 상이한 자료 제공으로 언론의 불신 초래 -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추측, 의견 등은 삼가, 유관기관 간 협의된 사항만 제공 • 그 외 진행사항(환자 수, 역학조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보건소등)에 문의하도록 안내 -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유지하여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교육청, 시·군·구청, 보건소, 식약처 등)의 언론대응 창구를 확인하고 학교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체제 유지 • 전 기관 자료제공 시 유관기관 간 상호 확인하고, 가능한 동일시점의 동일자료 제공 ※ 단, 「2개 이상의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 다발성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 대응 및 추가 확산방지를 위하여 식약처에서 언론대응 일원화 (언론사에서 공식자료 요구 시 식약처로 안내) <p>▷ 교육청 협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조리교의 경우 학교간 협조 조정 역할 수행 - 식단표, 급식일지, 식재료 납품업체 현황, 환자 발생 분포도 및 급식 외 요인(현장체험학습, 외부음식 반입여부, 매점 판매식품 등)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 협력 및 급식재개 협의 - 관내 모든 급식학교에 위생관리강화 공문 및 SMS 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확산 및 유사사례 발생 방지 노력 - 당해 학교 특별위생점검 및 지도 강화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위탁급식업체 운영학교 모니터링 관리 등 - 관계기관(학교, 교육청, 역학조사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파악하여 정보 공조 체제 유지(환자명단, 진행사항, 언론 대응 등) - 오염된 음식물 등 식품섭취 이외에 환자접촉, 구토물, 분변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 교육청 내 관련 부서 협력을 통해 예방 및 확산방지 철저 	<p>총괄대책반 언론대응창구 담당자</p> <p>교육청</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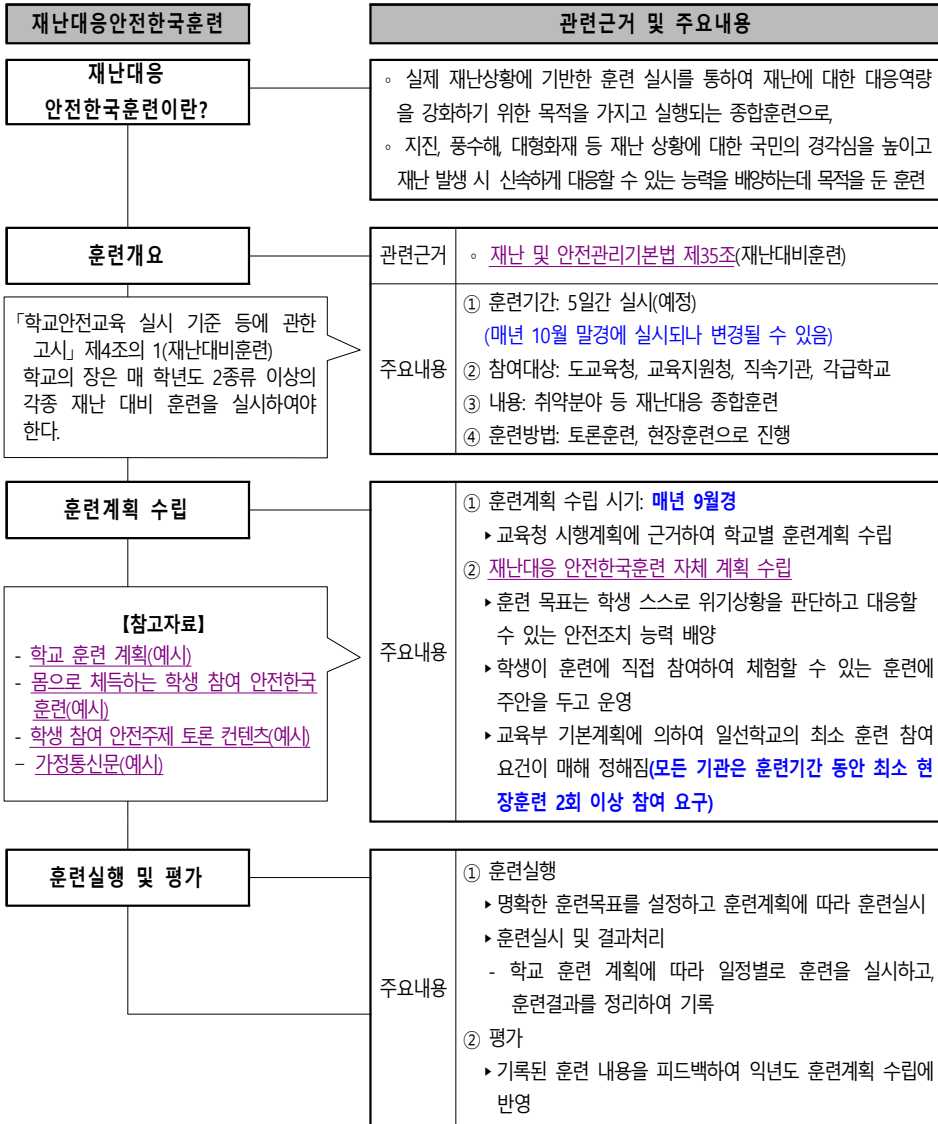
구분	수행 사항	비고
	<p>▷ 역학조사 실시 : 시·군·구청 및 보건소【부록 7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실시 - 채변검사(대변검체, 직장도말검체) - 보존식 수거 - 음용수 및 조리수 수질 검사 - 환경가검물 채취 	<p>시·군·구청 및 보건소</p>
<5단계> 환자발생 일일보고	<p>주요 내용</p> <p>환자발생 일일 현황 보고</p>	
	<p>세부 내용</p> <p>▷ 환자발생 일일 상황 보고【부록 4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는 환자발생 현황을 발생 익일부터 완치일까지 매일 1회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유선, 문자, 팩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17시 기준 환자 및 치료현황 엑셀로 작성 -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이송 및 심리적 안정 도모 	<p>환자파악팀</p>
<6단계> 환자발생 익일이후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실 대청소 및 소독 • 개인위생 및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 	
	<p>세부 내용</p> <p>▷ 급식실 대청소 및 소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시설·기구 등 대청소 및 살균·소독 실시로 청결하게 유지·관리 <p>▷ 개인위생 및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전, 용변 후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지도 및 가정과 연계 지도 - 급식실 및 화장실 등 교내 방역 실시 - 유증상자 사용 물품(의자, 책상, 소지품 등) 및 책상면, 손잡이 등 소독 실시 - 위생관리 취약분야 관리 대책 수립 - 매점에서 위생취약 제품 판매 금지 - 외부음식 반입 금지 - 정수기 급수 중단 및 끓인 물 제공 등 -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부정, 불량 식품 매식 금지 등 생활지도 	
<7단계> 조사후 조치	<p>주요 내용</p> <p>학교급식 재개 논의 및 준비 철저 식중독 발병학생 치료비 등 보상대책 마련 역학조사 결과 최종 보고(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p>	
	<p>세부 내용</p> <p>▷ 학교급식 재개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역학조사관(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 단순 식중독 경우 집단발병이 수습되고, 발생 원인이 제거되어 재발 요인이 없다고 판단 시 - 세균성이질 등 식품매개 감염병으로 밝혀진 경우 당해 학생들에게 유행이 없다고 판단 시 	<p>총괄대책반</p>

구분	수행 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적 급식환경이 조성되며, 조리종사자 보건검사결과 안전하다고 판단 시 - 마지막 확진환자 발생 후 1주일 이후에 급식 재개 <p>▷ 급식 재개 준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실 청소 및 식기구 소독과 조리기기 작동점검 - 급식실 및 교내 방역 실시 - 조리종사자, 납품업체 교육 실시 - HACCP시스템에 의거 위생·안전관리 철저 - 학교급식 재개에 따른 가정통신문 발송 - 계약해지 시 급식업체 재선정 방안 강구 <p>▷ 식중독 발병학생 치료비 등 보상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판명난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진료비 보상 청구(증빙자료 구비)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부과된 과태료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됨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에 의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식품위생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500만원 한도(부과금의 10%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직영급식 (학교장, 납품업체 등)</th> <th>위탁급식 (위탁급식업체)</th> </tr> </thead> <tbody> <tr> <td>식중독 원인균 검출 (식재료에 의한 원인)</td> <td>납품업체 보상</td> <td>위탁급식업체 보상</td> </tr> <tr> <td>식중독 원인균 검출 (조리 부적정 등 취급 소홀, 조리실무사 및 시설오염 등)</td> <td>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td> <td>위탁급식업체 보상</td> </tr> <tr> <td>식중독 원인균 미검출 (원인 불명)</td> <td>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td> <td>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자 결정</td> </tr> </tbody> </table> <p>자기부담금으로 공제),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관리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 공제급여 제외)</p> <p>▷ 식중독 역학조사 결과 귀책사유 있는 식재료 납품 업체(위탁업체) 제재조치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촉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위탁업체)와 계약 시 업체가 공급한 식재료 또는 급식품에 의해 식중독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계약이해지임을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 - 계약보증금 징구 및 세입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식중독 발생) 책임을 물어 식재료 납품업체 또는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징구하고 세입 조치 <p>▷ 역학조사 결과 최종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보고 : 학교로 통보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부록 8 참조】 - 보고내용 : 발생개요, 급식실시 현황, 주요 조치내용, 식중독 원인 조사결과, 안전공제회 등의 보상내용, 관련업체 조치, 시사점, 향후대책 등 ※ 역학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이의 제기】를 통해 조정 ※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는 시·군·구(보건소) 역학조사담당자가 	구분	직영급식 (학교장, 납품업체 등)	위탁급식 (위탁급식업체)	식중독 원인균 검출 (식재료에 의한 원인)	납품업체 보상	위탁급식업체 보상	식중독 원인균 검출 (조리 부적정 등 취급 소홀, 조리실무사 및 시설오염 등)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위탁급식업체 보상	식중독 원인균 미검출 (원인 불명)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자 결정	<p>환자이송팀 행정 지원팀</p> <p>※식중독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야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및보상에 관한법률44조 ②항)</p> <p>역학조사팀 력팀</p>
구분	직영급식 (학교장, 납품업체 등)	위탁급식 (위탁급식업체)												
식중독 원인균 검출 (식재료에 의한 원인)	납품업체 보상	위탁급식업체 보상												
식중독 원인균 검출 (조리 부적정 등 취급 소홀, 조리실무사 및 시설오염 등)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위탁급식업체 보상												
식중독 원인균 미검출 (원인 불명)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자 결정												

구분	수행 사항	비고
	<p>작성 → 질병관리청 최종 평가 후 그 결과가 보건소에 통보되므로 1개월 이내 처리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임</p> <p>▷ 교육청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질병관리청 평가 결과, 자치단체 행정처분 등 결과 확인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처분 기준」에 의하여 처분 실시(부록 11 참조) 	
<8단계> 모니터링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 지속적 모니터링 •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p>세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 지속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 방문 학생 위주로 긴밀히 주의관찰 ▷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부록 10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및 학생 손 씻기 실천 등 식중독 예방 교육 	
<p>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담당자별 임무를 숙지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함</p> <p>※ 본 자료는 업무매뉴얼·초등교무학사 『제26편 학교급식』의 「4. 식중독 발생시 대처요령」, 중등교무학사 『제25편 학교급식』의 「4. 식중독 발생시 대처요령」자료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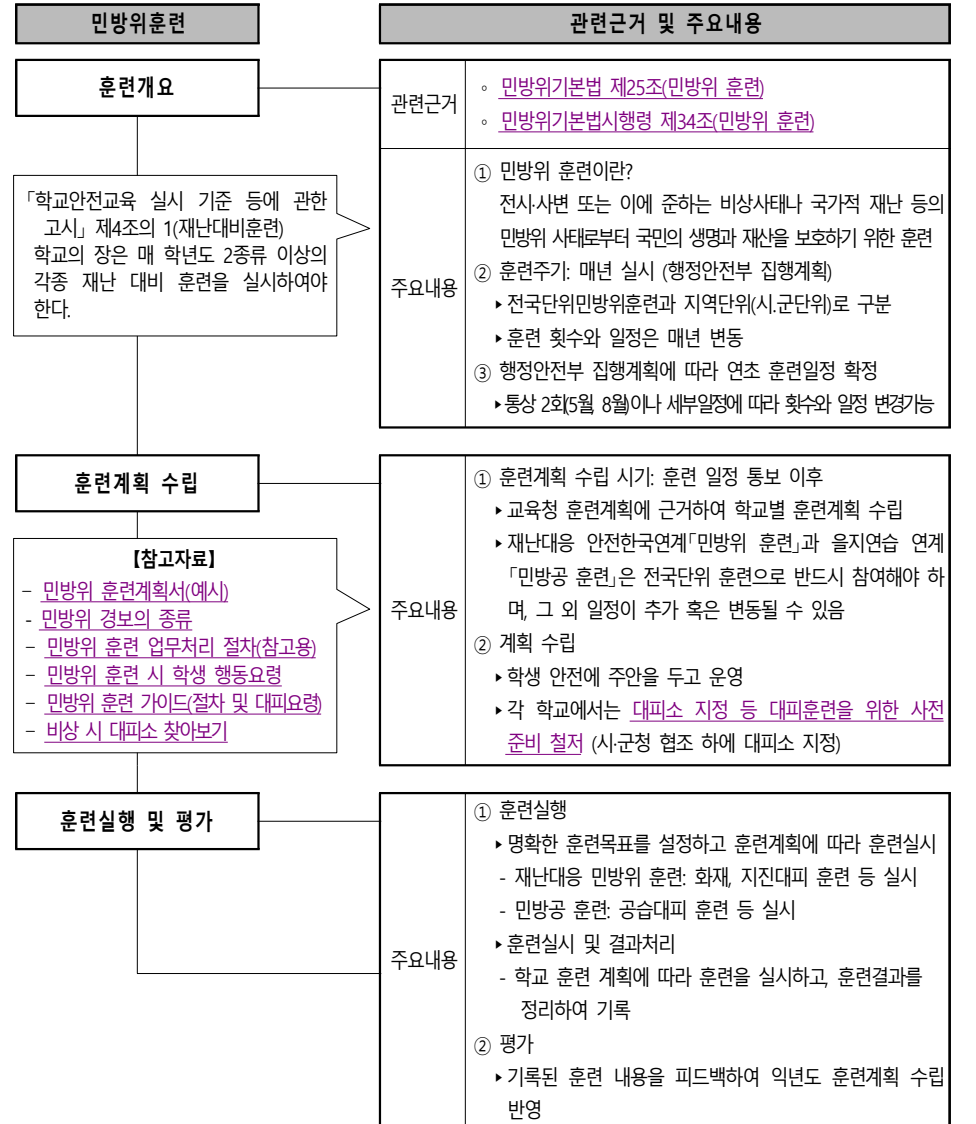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훈련 실시를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 풍토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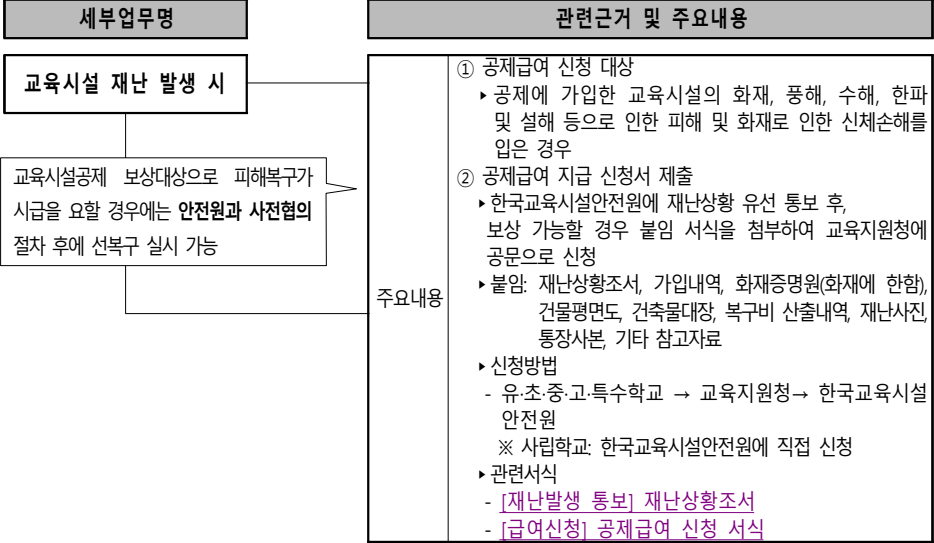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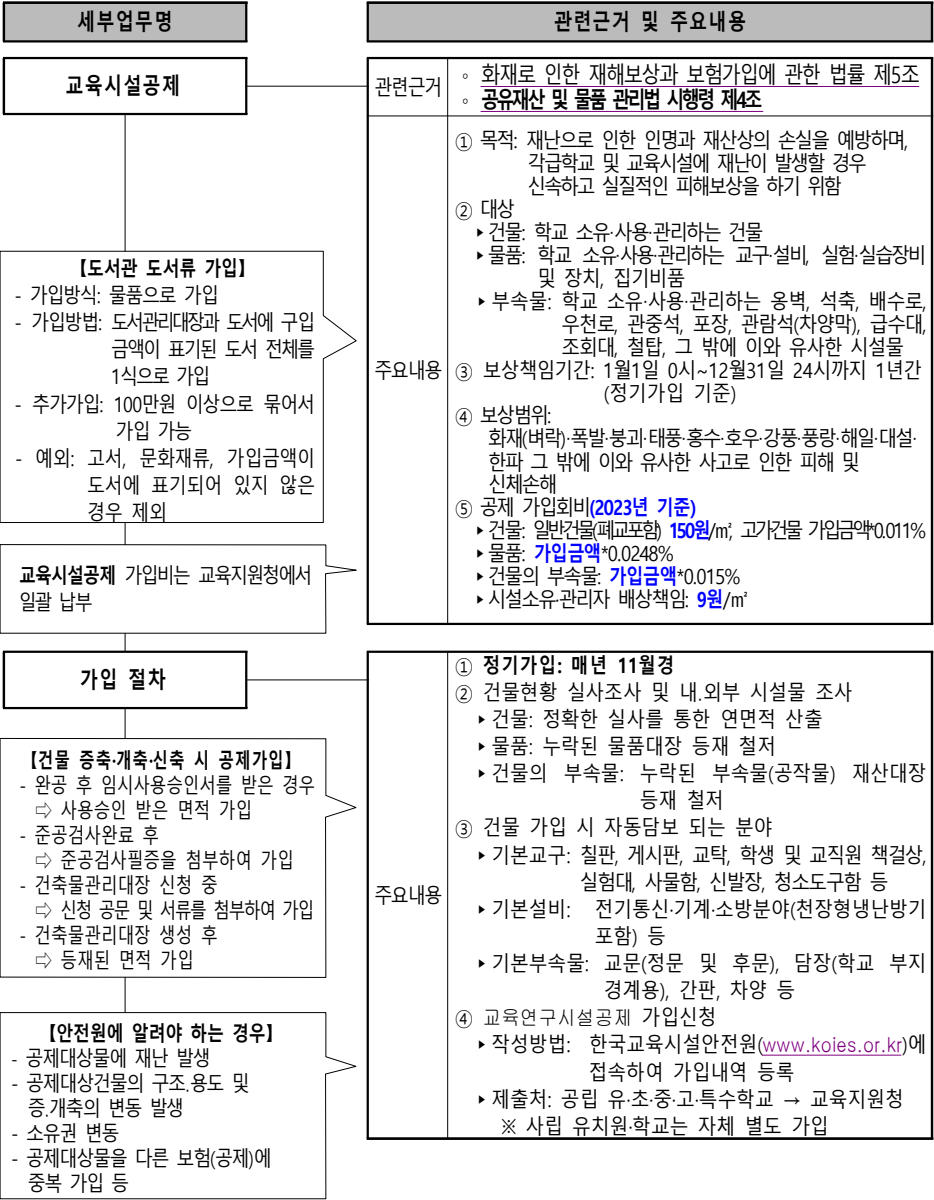
12. 민방위 훈련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



13. 교육시설공제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복구, 신체손해배상 및 제3자 법률적 배상책임 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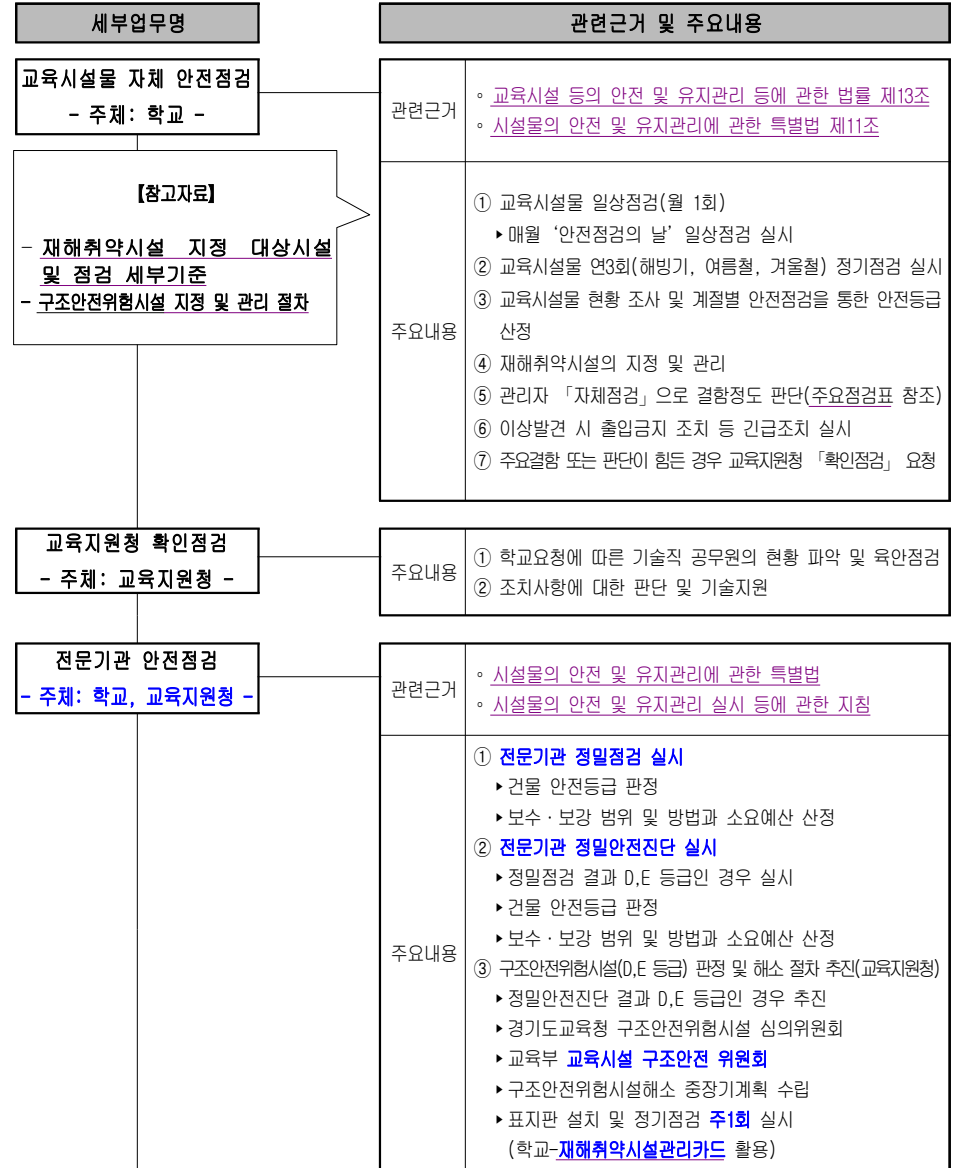


제 5 편 시설안전

업 무 명	시설안전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에 관한 규정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업무개요	학교시설물의 정기·수시 점검·관리로 안전한 상태 유지를 위한 건축·전기·소방·가스·승강기·용벽·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관련 업무	
주요내용	단 위 업 무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건축분야)	5. 승강기 분야 안전
	2. 전기 분야 안전	6. 용벽 안전점검
	3. 소방 분야 안전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4. 가스 분야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	8. 안전점검의 날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전기 분야 : 한국전기안전공사 ○ 소방 분야 : 한국소방안전원 ○ 가스 분야 : 한국가스안전공사 ○ 승강기 분야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건축분야)

계절별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건법 제23조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대상시설(이하 “어린이활동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 ②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연면적 33㎡ 이상) 또는 수선(70㎡ 이상)하는 경우 ▶ 시기: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 ▶ 학교에서 직접 상기 대상의 공사(리모델링 등 포함)를 할 경우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확인검사 실시 여부 확인 ③ 확인검사 부적합 시 활동공간 이용 중지 ④ 확인검사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는 확인검사 면제대상여부를 사전확인하고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한 경우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표지 인증 받은 자재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증축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한 경우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표지 인증 받은 자재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년간 비치 ▶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이 '17.1.1일부터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합성고무바닥재, 바닥재로 사용된 토양)를 신축, 증축, 수선 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 내역서 등 -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하여 환경표지제품 여부 확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실시 대상의 수선이라 함은 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

【참고자료】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항목 및 기준(수치)

2. 전기 분야 안전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일상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자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업무 수행 ▶ 선임자: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학교장) ▶ 선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압 1,000V 초과 전기수용설비 - 설비용량 20kW 초과 발전설비 ▶ 선·해임신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 신고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관할 시·도회 ②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주근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00;">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00;">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00;">개인대행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f00;">대상</td> <td>- 1,000kW미만의 전기 수용설비 - 500kW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td> <td>- 500kW미만의 전기 수용설비 - 300kW미만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근무 - 1,000kW이상의 전기수용설비 ③ 계약필수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업무 위탁 또는 대행업체 적격여부 확인 (전기설비규모에 따라 대행업체 달라짐/규칙 별표13 참조) 	구분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대상	- 1,000kW미만의 전기 수용설비 - 500kW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500kW미만의 전기 수용설비 - 300kW미만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구분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대상	- 1,000kW미만의 전기 수용설비 - 500kW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500kW미만의 전기 수용설비 - 300kW미만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전기시설 정기점검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상 및 시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00;">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00;">대상시설</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00;">점검시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f00;">자가용 전기설비</td> <td>-600V이상의 수전설비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td> <td>-3년마다 전후 2월 이내</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f00;">일반용 전기설비</td> <td>-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td> <td>-1년마다 전후 2월 이내 -2년마다 전후 2월 이내</td> </tr> </tbody> </table> <p>※ 자가용 - 1,000V 초과, 75kW 이상(대부분 학교) 일반용 - 1,000V 이하, 75kW 미만(소규모 학교)</p> 	구분	대상시설	점검시기	자가용 전기설비	-600V이상의 수전설비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3년마다 전후 2월 이내	일반용 전기설비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1년마다 전후 2월 이내 -2년마다 전후 2월 이내
구분	대상시설	점검시기								
자가용 전기설비	-600V이상의 수전설비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3년마다 전후 2월 이내								
일반용 전기설비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1년마다 전후 2월 이내 -2년마다 전후 2월 이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전기시설 일상점검

② 점검신청

구분	자가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신청시기	검사희망일 7일전까지	
신청서류	전기검사신청서(6호)	
검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결과표지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29호) 발급	
결과조치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부분은 검사완료일 로부터 3개월 이내 재검사	부적합시설은 그 사실을 통지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재점검

※ 참고자료 : 2023년 자가용 전기검사 수수료

③ 사전 준비사항

- ▶ 전기검사 시 정전이 수반되므로 전산 및 통신, 보안장비 및 승강기 등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체 및 교직원에게 전기검사 일자와 시간을 통보
- ▶ 전기검사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및 전기설비 책임 분계점 개방을 통한 인입선 점검
- ▶ 점검 결과의 보존 기간: 3년

④ 잔류성유기오염물질(PCBs) 관리대상기기 신고

- ▶ 근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 대상: 신규설치 유입식 변압기
- ▶ 신고내용: 별지 제8호서식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 절연유 교체여부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2mg이상)
- ▶ 신고기한: 설치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8호)**

① 전기설비용량에 따른 월 점검 횟수

구분	전기설비용량	점검횟수
저압	300kw 이하	월 1회
	300kw 초과	월 2회
고압	300kw 이하	월 1회
	300kw 초과 500kw이하	월 2회
	500kw 초과 700kw이하	월 3회
	700kw 초과 1,500kw이하	월 4회

주요내용

② 자가용 전기설비로서 계약용량이 1,000kw 이상이거나 발전용량이 300kw(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500kw)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대행 불가능.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교육시설에 상주

③ 연간점검계획 및 점검표 보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8호**에 따라 연간점검계획을 수립, 점검결과를 4년간 보관하며 전기검사 시 제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측정·시험항목	주기						기록서식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중	감리	
외관점검 및 부하측정	○				○	○	별지1호
저압 전기설비점검							별지2호
- 절연저항측정			△	○			
- 누설전류측정		△	△				
- 접지저항측정			○				별지3호
고압 전기설비점검							
- 절연저항 측정				○			
- 접지저항 측정					○		별지4호
- 절연내력 측정					○		
변압기 점검							별지5호
- 절연저항					○		
- 절연내력						△	별지6호
- 산기도 측정(절연유)							
계전기및차단기동작시험					○		별지7호
예비 발전 설비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별지8호
-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발전기무부하또는부하시험			○				
적외선열화상측정				○			
전원품질분석					○		

※ ○ : 필수 △ : 필요시

시설별 점검사항

주요내용

① 전기실 수변전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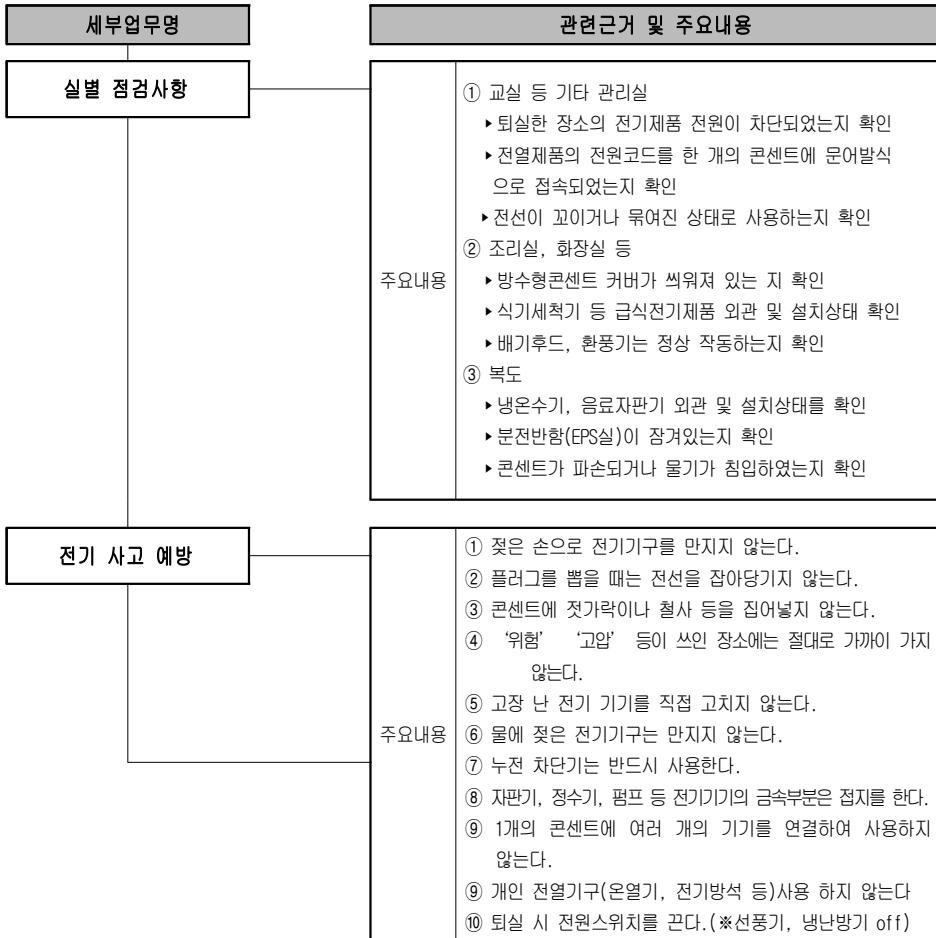
- ▶ 전기실 및 고압기기 외함의 청소 상태
- ▶ 유입식 특고압기기의 누유 및 팽창여부
- ▶ 누전경보기 누전 검출 여부
- ▶ 배전반 선로별 과부하 발생 여부

② 기계실 동력반

- ▶ 제어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 ▶ 동력기기(펌프, 팬)에서의 누전 발생 여부
- ▶ 콘덴서의 누유 및 팽창 여부
- ▶ 제어기기 및 동력기기의 부식, 노후 여부
- ▶ 집수정 배수펌프의 작동 상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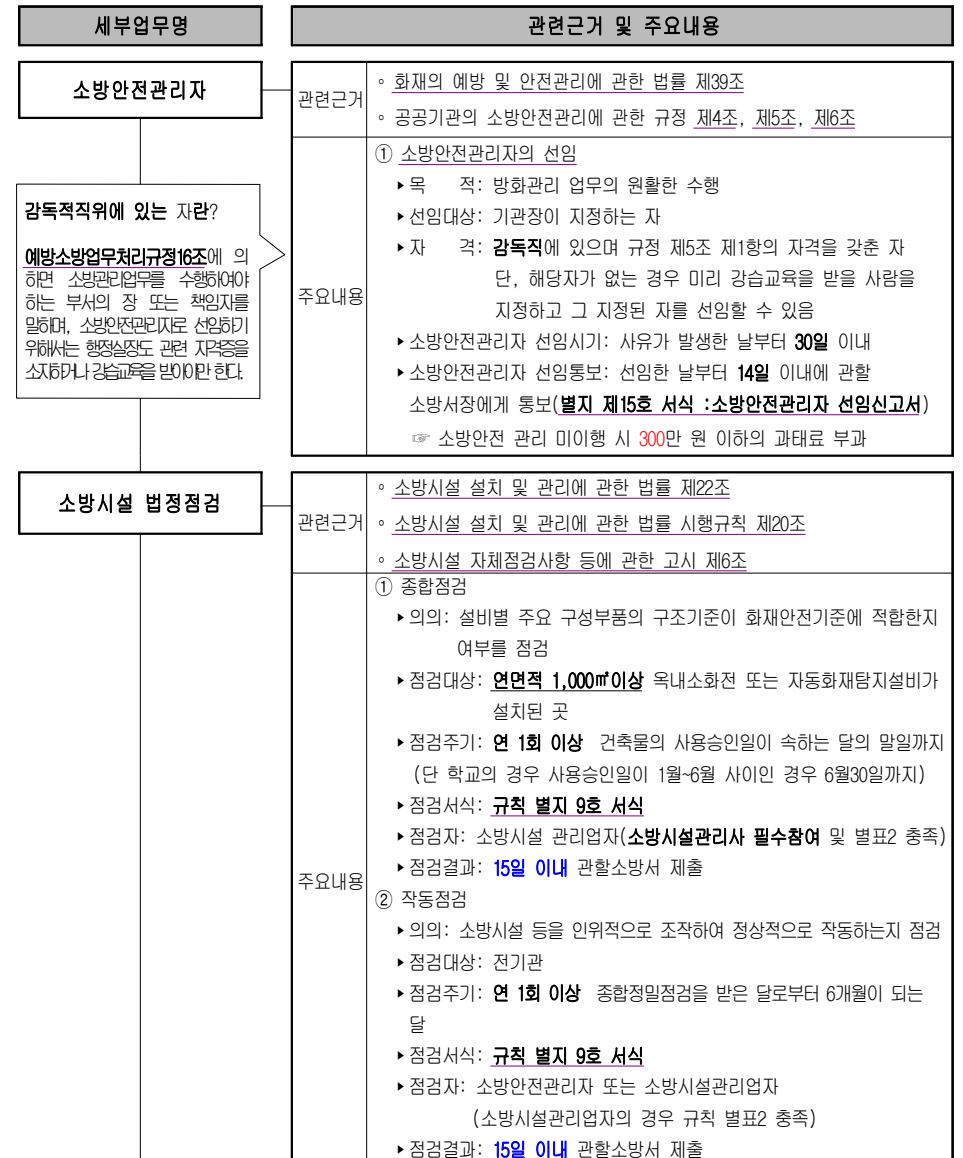
③ 각 층 분전반

- ▶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 ▶ 단자부 정상 접속 여부
- ▶ 선로별 과부하 발생 여부
- ▶ 선로별 누전 발생 여부
- ▶ 향 내에 물기 침입 또는 금속물질 방치 여부



3. 소방 분야 안전

화재예방을 위한 학교시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와 소방시설에 대한 법정점검, 일상점검, 자체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감독직직위에 있는 자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16조에 의하면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하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행정실장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일상점검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외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단,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생략가능) ▶ 점검서식: <u>소방시설외관점검표</u> ▶ 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결과: 2년간 점검결과 자체 보관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금지 - 비상구(출입구) 폐쇄, 통로·계단 철책 후 시건장치 등 폐쇄행위금지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 출입구 및 통로계단에 물건을 쌓거나 방호셔더구역 장애물 설치금지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 방화문 철거, 고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훼손행위금지 ▶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 방화구획, 방화문 임의변경, 무장총화 행위 등 금지
주요 점검사항	<p>점검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옥내소화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내소화전 함이나 부근에 조작설명서 부착 확인 - 학교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방식(수동기동방식, 자동기동방식)에 맞는 사용설명서 부착 확인 ▶ 옥내소화전 앞 물건 적치 금지 ▶ 옥내소화전함 내 규정 수량의 호수와 노즐을 구비하고 물건 보관 금지 ▶ 전원은 항상 ON상태가 되도록 하고 표시 등이 점등된 상태 유지 ▶ 호스는 지그재그 상태로 꼬이지 않도록 잘 감아 보관 ▶ 호스는 항상 관창에 체결한 상태로 관리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점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소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설치장소에 소화기위치표시 확인 ▶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 축압식 소화기는 바늘이 녹색이면 정상, 노랑은 재충전필요, 빨강은 과충전으로 바늘 눈금 확인 ▶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확인 ▶ 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인 분말소화기는 교체 설치 ※ <u>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u> 및 부칙 제3조에서 의무교체로 규정 ▶ 가압식 노후소화기는 폭발 위험성 등으로 수거 후 폐기 ③ 수신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기 조작부 스위치 정상위치 확인 ▶ 화재수신기가 있는 장소에 경계구역 일람표 비치 확인 ▶ 수신반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 시 이상 유무 확인 ④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파손, 변형, 탈락 확인 ▶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의 노후, 파손, 변형 확인 ▶ 피난기구 사용방법 표시 확인
이상 작동 시 조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실 화재감지기가 오동작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수신반에서 주경종, 지구경종을 정지시킨 후 수신반에 표시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작된 감지기를 분리한다. ② 화재수신반 주경종 및 각층 지구경종이 동작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복구 스위치를 누른 후 경종버튼을 원상 복구한다. ③ 소화펌프 동작 및 화재수신반 펌프의 기동확인 램프가 점등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반에서 펌프를 정지한 후 펌프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 수신반에 펌프 정지버튼이 없는 경우 펌프의 전원을 차단한다. ④ 각 층의 방화셔더 또는 방화문이 폐쇄되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반에 신호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한다. ▶ 폐쇄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폐쇄된 방화문 및 방화셔더를 복구한다. ⑤ 피난구유도등이 점등되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반에서 화재신호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한다. ▶ 화재신호가 복구되면 유도등은 자동으로 소등한다. ⑥ 스프링클러설비 사이렌이 동작하거나 헤드에서 물이 나올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반에서 사이렌 정지스위치를 눌러서 정지시킨다. ▶ 물이 나오는 층으로 이동하여 알람벨브실을 찾아 벨브를 잠근다. ▶ 소방전문업체에 연락한다.

4. 가스 분야(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

학교 가스시설(액화천연가스(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법적 의무사항 명시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 의무사항 (도시가스)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정가스사용시설(시행규칙 제20조의 2 및 별표1) 안전관리자(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 별표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시행규칙 제64조) 안전교육(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4) 정기검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p>주요내용</p> <p>① 대상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보호시설에서 월 사용예정량이 1,000m³ 이상인 가스사용시설로 학교 및 유치원은 제1종 보호시설 <p>② 저장능력별 관리 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월사용량</th> <th>안전관리자</th> <th>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th> </tr> </thead> <tbody> <tr> <td>3,000m³ 미만</td> <td>안전관리총괄자 1인</td> <td>의무아님</td> </tr> <tr> <td>3,000 ~ 4,000m³</td> <td>안전관리총괄자 1인</td> <td>의무가입</td> </tr> <tr> <td>4,000m³ 초과</td> <td>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td> <td>의무가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 책임자 겸임 가능 안전관리책임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p>③ 안전관리자 선임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퇴직 등의 경우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퇴직의 경우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 <p>④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양성교육(1회)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 수강 신청(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p>⑤ 정기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정압기는 설치 후 3년까지 1회 이상, 그 이후는 4년에 1회 이상 정압기 및 필터 분해점검 실시 	월사용량	안전관리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3,000m ³ 미만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아님	3,000 ~ 4,000m ³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가입	4,000m ³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의무가입
월사용량	안전관리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3,000m ³ 미만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아님											
3,000 ~ 4,000m ³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가입											
4,000m ³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의무가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 의무사항 (액화석유가스)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정사용자(시행규칙 제70조 및 별표1) 안전관리자(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5조제4항, 별표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5조제4항제2호) 안전교육(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66조, 별표19) 정기검사(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p>주요내용</p> <p>① 대상시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보호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자로 학교 및 유치원은 제1종 보호시설 <p>② 저장능력별 관리 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저장능력</th> <th>안전관리자</th> <th>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th> </tr> </thead> <tbody> <tr> <td>250kg 이하</td> <td>안전관리총괄자 1인</td> <td rowspan="2">경우에 따라 가입</td> </tr> <tr> <td>250kg 초과</td> <td>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td> </tr> </tbody> </table> <p>※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장능력이 500kg(자동절체기 사용 250kg)이상 저장능력이 500kg(자동절체기 사용 250kg) 미만 중 급식소 상시 1회 수용인원이 50인 이상 안전관리총괄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안전관리책임자의 해당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 책임자 겸임 가능 안전관리책임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p>③ 안전관리자 선임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퇴직 등의 경우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퇴직의 경우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 <p>④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양성교육(1회)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 수강 신청(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p>⑤ 정기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저장능력	안전관리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250kg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인	경우에 따라 가입	250kg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저장능력	안전관리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250kg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인	경우에 따라 가입							
250kg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5. 승강기 분야 안전

승강기시설의 법적 의무사항 명시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 의무사항 (승강기)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설치신고(법 제27조, 시행규칙 제46조) - 자체점검(법 제31조) - 각종검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53조) - 운행정지(법 제50조) - 안전관리자(법 제29조, 시행규칙 제48조) - 승강기관리교육(시행규칙 제52조) - 사고 및 고장보고(법 제48조, 시행령 제37조) <p>※ 승강기 종류 시행규칙 제2조 참조</p>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상시설: 모든 승강기 시설 ② 설치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설치공사업자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신고 ③ 자체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위탁점검의 경우, 유지관리업자가 입력 ▶ 관리주체 스스로 자체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 ④ 각종검사(한국승강기안전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 ▶ 정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 이내이며, 최초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수시검사: 승강기의 기능 등을 변경한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 정밀안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 및 정기, 수시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 중대한 사고(사망 등)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받아야 하며,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 실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운행정지: 각종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운행정지 명령 ⑥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운행에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 ▶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교육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이수해야하며, 주기는 3년 ※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면 유지관리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⑦ 사고 및 고장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중대사고나 중대고장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사고현장 또는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됨 - 중대사고: 사망자 발생,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중대고장: 시행령 제37조 제2항 참조
------	--

6. 옹벽 안전점검

옹벽 시설물에 대한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옹벽 자체 안전점검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p>주요내용</p> <p>① 옹벽시설물 현황 조사 및 안전등급 산정 ▶ 대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시설물</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2종 시설물 옹벽</td> <td>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연장 100m 이상 옹벽</td> <td></td> </tr> <tr> <td>3종 시설물 옹벽</td> <td>높이 5m 이상인 부분을 포함하는 연장 100m 이상인 옹벽</td> <td></td> </tr> <tr> <td>급경사지</td> <td>높이 5m, 경사도 34도, 연장 20m 이상 옹벽 및 축대</td> <td>2종 제외</td> </tr> <tr> <td>등급 미지정 시설물 옹벽</td> <td>높이 5m, 연장 20m 미만 축대, 옹벽, 석축</td> <td></td> </tr> </tbody> </table> <p>▶ 시기: 국가안전대진단(해빙기 2월~4월), 여름철(6월~8월), 겨울철(11월~12월)</p> <p>② 관리자 「자체점검」으로 결함정도 판단</p> <p>③ 이상발견 시 출입금지 조치 등 긴급조치 실시</p> <p>④ 주요결함 또는 판단이 힘든 경우 교육지원청 「확인점검」 요청</p>	구분	시설물	비고	2종 시설물 옹벽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연장 100m 이상 옹벽		3종 시설물 옹벽	높이 5m 이상인 부분을 포함하는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급경사지	높이 5m, 경사도 34도, 연장 20m 이상 옹벽 및 축대	2종 제외	등급 미지정 시설물 옹벽	높이 5m, 연장 20m 미만 축대, 옹벽, 석축	
구분	시설물	비고														
2종 시설물 옹벽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연장 100m 이상 옹벽															
3종 시설물 옹벽	높이 5m 이상인 부분을 포함하는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급경사지	높이 5m, 경사도 34도, 연장 20m 이상 옹벽 및 축대	2종 제외														
등급 미지정 시설물 옹벽	높이 5m, 연장 20m 미만 축대, 옹벽, 석축															
교육지원청 확인점검	<p>주요내용</p> <p>①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 파악 및 육안점검</p> <p>② 조치사항에 대한 판단 및 기술지원</p>															
제2종·제3종 시설물(옹벽) 전문기관 안전점검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p>주요내용</p> <p>① 전문기관 정기점검 실시(반기에 1회) ▶ 육안점검하여 옹벽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 ▶ 필요한 경우 긴급점검 실시</p> <p>② 전문기관 정밀점검 실시(안전등급에 따라 2~3년에 1회) ▶ 옹벽 안전등급 판정 ▶ 보수·보강 범위 및 방법과 소요예산 산정</p>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기구 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p>주요내용</p> <p>①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p> <p>②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이동되지 않도록 고정된 것)가 다음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p>
안전관리(검사)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p>주요내용</p> <p>①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설치 후 안전검사기관에 신청<설치(정기시설)검사 신청서></p> <p>②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점검주기: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에 신청<설치(정기시설)검사 신청서></p> <p>③ 안전진단 ▶ 월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부터 1개월 이내 안전검사기관에 신청<안전진단 신청서> ▶ 안전진단 실시대상 3년간 보관</p> <p>④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의 표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부착</p>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점검)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0조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놀이기구별로 월 1회 이상 점검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참조) ▶ 안전점검 실시대상 3년간 보관 ② 안전교육(2년에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 교육시점: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담당자 변경 사유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 교육주기/시간: 2년에 1회/4시간 이상 ▶ 안전관리지원기관에 신청
안전관리(보고)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6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3조, 제14조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용금지, 폐쇄, 철거 현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금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어린이놀이시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교육지원청에 보고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보 -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 놀이시설 폐쇄 및 철거 시 교육지원청에 보고 ▶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 시 교육지원청 보고 <참고: 중대사고 보고서식> ② 시설개선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지원청에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보 -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③ 안전관리자 및 보험 변경 현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및 보험가입 현황 변경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참고자료】

-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 요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및 보험 등록 매뉴얼

【중대사고 범위】

- 사망
-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상
-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 신경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2도 이상의 화상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이상
- 내장의 손상

8.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 실시

안전점검의 날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안전점검의 날	<p>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 <p>주요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행일: 매월 4일(자체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②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의 날」 연간 계획 수립 -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다양한 행사 추진(캠페인, 재난 안전 교육 등)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 각 분야별·시기별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후 월별 보고(내부결재 등) - 실별 안전 점검 실시(교육부 제공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 활용)

【참고자료】

- 월별 중점 사항
- 월별 주제선정 예시
- 「안전점검의 날」 홍보문구(예시)
- 자율안전점검표(행정안전부)
- 안전점검의 날 운영 우수사례
-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 (교육부)
-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용 가이드(교육부)
- 나·참·반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